

연구보고 17-R12-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책임연구원 양계민

RESEARCH REPORT 2017

NYPI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정책제언

- ▶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되었던 정책제언을 총정리하고,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주요 부처별 정책, 법률 등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국내외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주요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 간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에 관한 총괄적 분석을 통해 추진여부를 평가하였고,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향후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도출된 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가져야 할 비전은 '성숙과 번영의 사회구현'이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미래사회성장동력 창출이고, 둘째는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이다. 첫 번째 목적인 미래사회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학력 및 진로격차를 가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지지집단의 역량강화이다. 두 번째 목적인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은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친다문화적 환경조성과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도출하였다. 각 추진전략별로 총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되었던 정책제언을 총정리하고,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주요 부처별 정책, 법률 등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국내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법률 등 분석
-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현황과 한계 분석
- 그 간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에 관한 총괄적 분석
-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SWOT분석
- 향후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위한 방향과 과제 도출

3. 정책제언

1)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 심리상담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2) 지지집단 역량강화

- 부모 역량강화
- 교사 역량강화
-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관련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3) 친다문화적 환경조성

- 청소년 다문화이해교육 내실화
- 다문화친화적 지역사회환경조성시스템 구축

4)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체계 확립

- 지역사회 중심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모형 개발 및 지역사회연계체계 구축
-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검토 및 개정
- 다문화청소년정책 관련 기초통계자료 구축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추진 절차	4
3. 연구의 내용	5
II.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분석 및 평가	9
1. 다문화청소년 관련 국내외 법령 분석	11
2.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분석	24
3. 주요 부처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 분석	43
III. 정책제언	63
1. 종단연구(2011~2016)의 정책제언 검토	65
2.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개선방향	93
3. 다문화청소년정책 및 관련 환경의 SWOT분석	98
4.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 종합계획: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103
5. 결론	135
참고문헌	137

표 목차

〈표 II-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아동의 4대 권리	19
〈표 II-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 다문화가정 지원 계획	25
〈표 II-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영역의 과제 및 세부내용	28
〈표 II-4〉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 지지집단 역량강화 영역의 과제 및 세부내용	30
〈표 II-5〉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영역의 과제 및 세부내용	31
〈표 II-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계획의 성과	32
〈표 II-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다문화 관련 계획	35
〈표 II-8〉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다문화 관련 계획의 성과	38
〈표 II-9〉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중 다문화청소년정책 관련 내용	39
〈표 II-10〉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성과	41
〈표 II-11〉 2017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	44
〈표 II-12〉 여성가족부의 다(多)재다능 사업 내용	53
〈표 II-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서비스 중 자녀지원사업	58
〈표 II-1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	60
〈표 III-1〉 본 연구(2011~2016)에서 도출된 정책제언의 영역별 분류	69
〈표 III-2〉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관련 주요 연구결과	71
〈표 III-3〉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관련 정책 추진현황	73
〈표 III-4〉 지지체계 역량강화 관련 주요 연구결과	77
〈표 III-5〉 지지체계 역량강화 관련 정책 추진현황	80
〈표 III-6〉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관련 주요 연구결과	82
〈표 III-7〉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관련 정책 추진현황	83
〈표 III-8〉 추진방향 관련 주요 연구결과	84

〈표 Ⅲ-9〉 추진방향과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85
〈표 Ⅲ-10〉 추진방식 관련 주요 연구결과	87
〈표 Ⅲ-11〉 추진방식 관련 정책 추진현황	89
〈표 Ⅲ-12〉 추진체계 관련 주요 연구결과	90
〈표 Ⅲ-13〉 추진체계 관련 정책 추진현황	91
〈표 Ⅲ-14〉 정책근거 관련 주요 연구결과	92
〈표 Ⅲ-15〉 정책근거 관련 정책 추진현황	92
〈표 Ⅲ-16〉 본 연구의 정책제언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04
〈표 Ⅲ-17〉 지역 주요 청소년관련 기관 및 주요 업무분장(안)	130

그림 목차

【그림 Ⅰ-1】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추진과정	4
【그림 Ⅲ-1】 그 간 수행된 본 연구(2011~2016)의 연도별 핵심주제 및 정책제언의 주요 내용	67
【그림 Ⅲ-2】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생태학적 접근	94
【그림 Ⅲ-3】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SWOT분석	102
【그림 Ⅲ-4】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비전, 목적,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103
【그림 Ⅲ-5】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전략의 로드맵	115
【그림 Ⅲ-6】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전략의 로드맵	123
【그림 Ⅲ-7】 ‘친다문화적 환경조성’ 전략의 로드맵	127
【그림 Ⅲ-8】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안)	129
【그림 Ⅲ-9】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전략의 로드맵	135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추진 절차
3. 연구의 내용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 사회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넘었다. 본 연구도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 현재까지 8년 째 수행되고 있고, 매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청소년의 지형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과거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 측면도 있고, 초기에는 주로 어린 연령층의 아동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해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들을 점검해 보고 현재의 변화된 상태와 향후 변화의 양상을 예측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총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국내외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셋째로 다문화청소년 관련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사업을 검토 및 분석하였고, 넷째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되었던 정책제언의 내용을 총 정리하고, 그 중 실행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부족한 부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을 근거로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외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령 검토 및 분석

둘째,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검토 및 분석

셋째, 다문화청소년 관련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사업 검토 및 분석

넷째, 중단연구의 정책제언 검토 및 총괄분석

다섯째, 향후 다문화청소년정책 개선방향 및 과제 도출

2. 연구추진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

단 계	내 용
1단계 ↓	국내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 기본계획, 부처별 정책 등 분석
2단계 ↓	그간(2011~2016) 수행된 연구의 정책제언 분석(장점과 한계)
3단계 ↓	종단연구결과 분석의 함의 도출
4단계 ↓	전문가 자문회의(학계, 현장, 공무원) 및 정책실무협의회
5단계 ↓	1차 정책과제 도출
6단계 ↓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회의
7단계 ↓	2차 정책과제 수정안 도출
8단계 ↓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회의 및 현장 공무원 검토
9단계 ↓	3차 수정안 도출
10단계	최종안 제시

【그림 1 -1】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추진과정

우선 1단계에서는 국내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령, 기본계획, 부처별 정책 등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 그간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연구의 정책제언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초점을 둔 것은 제안된 과제가 어떤 영역이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의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되지 않은 영역은 어떤 영역들인지, 따라서 향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등이었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분석결과와 함의를 정책적 시각에서 재분석하였고, 4단계에서는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다문화청소년에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요구, 향후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5단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수렴하여 1차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6단계로 도출된 1차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회의를 실시하였고, 7단계에서는 검토를 통한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8단계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현장전문가, 학교교사 등 당사자 및 관련자를 중심으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9단계에서는 3차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10단계에서는 최종 수정된 정책안을 가지고 부처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다문화청소년지원 관련 법령 검토 및 분석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각종 법률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하는데 적용하고자 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검토 및 분석

(1) 제2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가장 먼저 제2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는데, 다문화가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특성별로 재분류하여 i)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ii)지지집단 역량강화, iii)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의 총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현실적 상황과 한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두 번째로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정책을 분석하였다.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계획 및 추진되는 것으로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3)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세 번째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과제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라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다.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외국출생자녀들에 대한 정책이 초점이기때 한국어교육, 공교육진입 강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등과 같은 사업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관련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 및 제시하였다.

3) 주요 부처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 검토 및 분석

네 번째로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주요 부처의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제언에 활용하였다.

4) 종단연구의 정책제언 검토 및 총괄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언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들의 현실반영도와 현실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총 6년간 제시한 정책제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연구에 나타난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5) 향후 다문화청소년정책 개선방향 및 과제도출

마지막으로 위에서 분석한 내용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분석 및 평가

1. 다문화청소년 관련 국내외 법령
분석
2.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분석
3. 주요 부처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 분석

제 II 장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분석 및 평가

1. 다문화청소년 관련 국내외 법령 분석

한국에서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는 크게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청소년지원 근거의 가장 대표적인 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생활정보 및 보육, 교육 등에 대한 지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니는 한계는 기존의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대상 범위의 협소성이다(권영호, 지성우, 강현철, 2009; 박복순 외, 2013).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지원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아래의 박스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필수요소로 정의하고 있기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그들의 자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의미가 국제결혼가정 중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고,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게 된다(박복순 외, 2013, p. 3).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생활정보지원과 교육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결국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되고,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과 동포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시행일 2016.6.2]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5.12.1., 2017.3.21.>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6.3.2.>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1.>
- 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12.1.>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경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다문화청소년을 포괄하는 법으로 보인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제 18조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다문화가족청소년 이외에도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사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 15조의 이주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이주배경청소년의 복지,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연수, 국민의 인식개선 및 실태조사, 사회적응프로그램개발 등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주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제 15조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교육 및 위기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의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위한 전반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에 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다양한 다문화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교육권을 특별히 보장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등의 경우 학력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일이 다수였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다문화청소년들의 공교육진입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을 뿐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나 학교의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의무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한국사회의 다문화이해수준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제목개정 2013.10.30.]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30.]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전문개정 2013.10.30.]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①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와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이탈주민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0.30.>
-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대상·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다루고 있다. 제 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 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과 그들을 둘러싼 다수자의 이해증진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법에서 보장하는 대상이 ‘합법적 체류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우를 법에서 보장할 경우 사실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이승우, 200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원칙은 타당하다. 불법체류자의 지원을 법에서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모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처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이라는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부적절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법체류자들 중에서 한국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자, 특히 이 중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자 기르고 있는 경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조상균, 이승우, 전진희, 2008, p. 155; 이승우, 2009 재인용)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자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나, 인간으로써 차별 없는 교육과 생활지원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고, 다른 다문화청소년들과 동일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
-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이주배경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가능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인간주체로 규정하는 협약으로(다음백과, 2017년 10월 17일 검색), 한국은 1990년 조약에 가입하였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 6조 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국내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 54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동의 권리는 크게 네 가지 권리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생존의 권리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주거, 영양, 보건 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보호의 권리는 모든 학대와 방임, 폭력, 차별, 폭력, 고문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하여, 세 번째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여가, 문화생활, 정보 등을 가질 권리와 생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표 II-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아동의 4대 권리

권리	내용	관련조항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제 6, 7, 8, 9, 19, 20, 21, 23, 24, 26, 27, 30, 32, 33, 34, 35, 38조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 2, 7, 10, 11, 16, 19, 20, 21, 23, 25, 32, 33, 34, 35, 36, 37, 39, 40조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제 5, 6, 9, 10, 11, 12, 13, 14, 15, 17, 24, 28, 29, 31조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 12, 13, 15, 17, 18조

※ 출처 :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 (여성가족부, 2012, p. 7)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조 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자신 또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 중 특히 교육과 관련된 조항은 28조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8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인 출석과 탈락을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개발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 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개발
 -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안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개발
2.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위기청소년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 19조는 위기청소년보호의 의무를, 23조는 장애청소년의 보호 및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 역시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는 것을 의미하고,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장애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들의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9조 :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가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 :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기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동참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다음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기에 필요한 경우 한국정부는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 31조에는 ‘청소년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 및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적절한 기회를 제공 및 장려해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 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 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31조 :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기만 해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어도 아직 국적취득을 하지 않고 입양의 형태로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 등과 같은 경우는 국내출생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가장 취약한 집단은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로, 이들은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의료보험, 보육서비스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장애를 지니거나 가정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있다는 것이 발견될지라도 일반적인 청소년과 같은 보호 및 치료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2월 국회에서 이자스민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이 법안은 2016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국회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아동복지법」,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등과 중복되거나, 특히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불법체류 중인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과 충돌될 우려가 있고, 상당한 재정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다(법제사법위원회, 2015, p. 26). 이러한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6) 소결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간략히 검토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 한국국적을 지니지 않은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또는 미등록 이주아동 등에 대한 문제이고, 국적을 지니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분야는 비교적 권리 및 지원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다. 그 외 아동학대나 가정의 이탈상황 등 위기상황이나 건강지원에 대한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다문화이해증진에 대한 부분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서 모두 다문화이해증진을 다루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및 보호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개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분석

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2017년 현재 2차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6개 영역이 다문화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다. 6개 영역은 2-1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과 2-2의 '한국어능력 향상', 2-3의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 2-4의 '기초학력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의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의 '학교에서의 다문화이해 제고'이다. 이 중 2-1은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는 볼 수 없고, 2-2에서 2-5까지의 4개 영역은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이며, 5-4 영역은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중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역량을 개발하여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학령기 이전이나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과 학령기 이전의 유아를 둔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 그리고 레인보우스쿨과 같이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프로그램 등을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외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과 학부모교육 사업을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학령기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범위가 가장 넓고 다양한 영역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한국어교육이나 언어발달 등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2-1-1의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이라는 과제가 있으나 직접적인 다문화청소년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II-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 다문화가정 지원 계획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2-1.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1-1. 건강정보문해력 향상	다문화 가족	◦ 기본적인 건강정보에 대한 문해력 향상 방안 실시 ◦ 다문화가정 건강검진 통번역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2-1-2.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언어발달 진단→언어교육→진전평가' 를 통해 언어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2-1-3.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이중언어 강사 양성 체계화(전담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심화과정 신설) ◦ 기초 모국어 교재 보급 ◦ 다문화 이해교육 지도서 개발·보급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언어영재교실사업	여성가족부 교육부
	2-1-4.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	다문화 가족	◦ 생애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의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 다문화학부모 설명회, 간담회 개최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 학부모모임 활성화 ◦ 글로벌 맘스 운영 ◦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이해하기 자료 제작 및 보급	여성가족부 교육부
2-2. 한국어 능력 향상	2-2-1.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유	다문화 가족자녀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인터넷 공유	문화체육 관광부
	2-2-2. 다문화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 한국어교육과정(KSL) 운영 ◦ KSL 표준교재 및 진단도구 개발 ◦ KSL 방송콘텐츠 개발 ◦ KSL 연구학교 운영 ◦ 특별학급과 일반학급에서의 교차 학습 ◦ 방과후학교 활용	교육부 문화체육 관광부
2-3. 학교 생활 초기 적응 지원	2-3-1. 초등학교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다문화 가족자녀	◦ 초등학교 이하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확대 ◦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2-3-2. 예비학교 전국운영	다문화 청소년	◦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4개교) ◦ 예비학교 확대(50개교)	교육부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2-3-3.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2-3-4. 초기적응프로그램 Rainbow School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 Rainbow School 확대	여성가족부
2-4. 기초 학력 향상 및 진학 지도 강화	2-4-1.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다문화 가족자녀	◦ 학부모교육서비스 ◦ 기존의 글로벌선도학교, 다문화 연구학교, 예비 학교를 글로벌선도학교(연구형, 예비형, 거점형, 집중형)으로 통합하여 다문화 친화적 학교 구축 ◦ 교사, 또래,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운영 및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 교육부
	2-4-2. 진로 · 진학지도강화	다문화 가족자녀	◦ 글로벌 브릿지 사업 운영 ◦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학 진학 기회 확대(사회적 배경대상자 전형에 다문화학생 포함, 재직자 특별전형에 다문화학생 선발 권장)	교육부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2-5-1.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	다문화 가족자녀	◦ 전담 코디네이터 및 입학절차 안내 자료(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배치 ◦ 학력심의회위원회 구성 ◦ 다문화 친화적 정규학교 배정 ◦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 시도교육청 다문화전담직원 역량강화	교육부 법무부
	2-5-2. 각종 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다문화 가족자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 교류 등의 일정 비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가족부
	2-5-3.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 포함	이주배경 청소년	◦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되도록 재구조화 방안 모색	여성가족부
5-4. 학교 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4-1. 일반학생-다문화 학 생 간 상호 이해 교육 강화	일반 청소년	◦ 다문화 이해활동 지원 강화 ◦ 다문화 교육주간 실시	교육부
	5-4-2. 다문화 교육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일반 청소년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에 ‘다문화교육’ 내용 반영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 관광부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5-4-3.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및 쌍방향 교류· 체험 기회 확대	일반 청소년	◦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문화다양성 교구재 ‘다문화꾸러미’ 활용을 통한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	문화체육 관광부
	5-4-4. 교원의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	다문화 담당교원	◦ 다문화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 발간 ◦ 교원 연수과정 체계화·의무화 ◦ 학교관리자 다문화교육 의무적 이수 추진 ◦ 신규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교육’ 포함 ◦ 교·사범대에 다문화 이해 강좌 운영	교육부

※ 출처 : 양계민 외(2013), p. 240-242.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주요 영역별로 재분류해보면, 크게 i)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ii) 다문화집단을 둘러싼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그리고 iii) 친다문화적 환경조성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의 내용은 다시 한국어교육 및 언어지원, 학교적응지원, 공교육진입방안, 한국사회초기적응, 심리적응, 그리고 진로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과제를 담고 있는 것이 한국어교육 및 언어지원인데, 이는 현재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사회가 다문화청소년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즉, 우리사회가 다문화청소년을 보는 시각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가까운 존재라는 시각이다. 물론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부 통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79.8%가 국내출생이고 그 나머지인 20%만이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 자녀임을 감안해보면(교육부, 2016), 정책대상 중 소수에게 해당되는 한국어교육과 언어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관심의 정도와 실제 사업의 충실성 및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음은 학교적응지원으로, 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학교들과 멘토링사업,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방문돌봄서비스와 자녀생활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교육진입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들에게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시도별로 전담 코디네이터

를 고용하는 등 학교에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입학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들 중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밖청소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응 측면에서 더욱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공교육진입을 유도하는 사업은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생각된다. 그 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초기적응프로그램으로 여성가족부의 레인보우스쿨과 심리적응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CYS-Net 재구조화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편이고, 단순히 사업의 확대나 재구조화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진로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글로벌브릿지사업과 다문화직업교육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그리고 대학진학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다문화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좀 더 사업의 내용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표 II-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영역의 과제 및 세부내용

영역	과제명	세부내용
한국어 교육 및 언어지원	2-1-2.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 언어발달 진단→언어교육→진전평가' 를 통해 언어교육 확대
	2-1-3.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대	◦ 이중언어 강사 양성 체계화(전담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심화과정 신설) ◦ 기초 모국어 교재 보급 ◦ 다문화 이해교육 지도서 개발·보급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언어영재교실사업
	2-2-1.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유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인터넷 공유
	2-2-2. 다문화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 한국어교육과정(KSL) 운영 ◦ KSL 표준교재 및 진단도구 개발 ◦ KSL 방송콘텐츠 개발 ◦ KSL 연구학교 운영 ◦ 특별학급과 일반학급에서의 교차 학습 ◦ 방과후학교 활용
학교적응	2-4-1.	◦ 학부모교육서비스

영역	과제명	세부내용
지원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 기존의 글로벌선도학교, 다문화 연구학교, 예비학교를 글로벌선도 학교(연구형, 예비형, 거점형, 집중형)로 통합하여 다문화 친화적 학교 구축 ◦ 교사, 또래,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운영 및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3-1. 초등학교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초등학교 이하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확대 ◦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2-3-2. 예비학교 전국운영	◦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4개교) ◦ 예비학교 확대(50개교)
	2-3-3.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공교육 진입방안	2-5-1.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	◦ 전담 코디네이터 및 입학절차 안내 자료 배치 ◦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 다문화 친화적 정규학교 배정 ◦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 시도교육청 다문화전담직원 역량강화
한국사회 적응	2-3-4. 초기적응프로그램 Rainbow School운영	◦ Rainbow School 확대
심리적응 지원	2-5-3.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되도록 재구조화 방안 모색	◦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되도록 재구조화 방안 모색
진로지원	2-4-2. 진로·진학지도강화	◦ 글로벌 브릿지 사업 운영 ◦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학 진학 기회 확대(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다문화학생 포함, 재직자 특별전형에 다문화학생 선발 권장)

※ 출처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두 번째 영역은 지지집단의 역량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부모교육의 경우는 비교적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서비스와 방문돌봄서비스, 그리고 다문화학부모설명회와 간담회, 학부모교육, 다문화학부모모임 활성화,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다문화이해하기 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이 세부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함께 역량을 키우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정과 학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비해 계획 자체는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다문화이해하기 자료 제작 및 보급은 대상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있다고 보인다. 다문화 이해하기 교육은 다문화학부모가 아니라 일반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전달하고 교육해서 전체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교사교육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 발간과 교원연수과정 체계화 의무화, 학교관리자 다문화교육 의무적 이수 추진, 신규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교육 포함, 교·사범대에 다문화이해 강좌 운영 등은 모두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잘 반영한 계획으로 판단된다. 다만, 규정정비와 양적 확대에 대한 내용 등 시스템구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내용적 측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II-4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 지지집단 역량강화 영역의 과제 및 세부내용

영역	과제명	세부내용
부모교육	2-1-4.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	◦ 생애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의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 다문화학부모 설명회, 간담회 개최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 학부모 모임 활성화 ◦ 글로벌 맘스 운영 ◦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이해하기 자료 제작 및 보급
교사교육	5-4-4. 교원의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	◦ 다문화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 발간 ◦ 교원 연수과정 체계화 의무화 ◦ 학교관리자 다문화교육 의무적 이수 추진 ◦ 신규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교육' 포함 ◦ 교·사범대에 다문화 이해 강좌 운영

※ 출처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마지막으로는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과 관련된 영역의 과제는 아래와 같이 각종 위원회에 다문화가족청소년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과 전체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다문화가족청소년이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그에 이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운영에 있어서 다문화민감성이 반영된 운영규칙 등의 가이드라인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문제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체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향후 점점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성에 비해 과제의 세부 내용은 자료개발 및 보급에 그치고 있을 뿐 다문화이해교육의 구체적 확산방안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 다문화교육과 일반 성인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표 II-5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영역의 과제 및 세부내용

영역	과제명	세부내용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2-5-2. 각종 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의 일정 비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다문화수용성 제고	5-4-1. 일반학생-다문화 학생 간 상호 이해 교육 강화	◦ 다문화 이해활동 지원 강화 ◦ 다문화 교육주간 실시
	5-4-2. 다문화 교육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에 '다문화교육' 내용 반영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 및 보급
	5-4-3.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및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	◦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문화다양성 교구재 '다문화꾸러미' 활용을 통한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

※ 출처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마지막으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가정 자녀지원계획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양적인 부분에서 사업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고 수량화가 가능한 것을 목표로 정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으나 지나치게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양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질적으로

그 내용이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원대상 다문화연수 참여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 교육의 내용이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다문화 역량강화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 성과지표로는 가능하지 않다. 또 하나의 예로 다문화멘토링의 참여자 역시 양적으로 목표량이 정해져 있으나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이 멘토링을 통해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질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의 경우도 몇 건을 했는지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단순히 나열된 과제들에 대한 양적인 성과물 늘리기에 초점을 둔다면, 그 내용의 목표부합성과 충실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표 II-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계획의 성과

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성과		
			2014	2015	2016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1-2.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언어발달지도사 수	300명	300명	300명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수	3종6권	3종6권	-
	2-1-3.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대	이중언어강사(코치) 수	22명	120명	-
		사업운영	6개소	197개소	-
		이중언어강사 보수연수	-	249명	-
		이중언어환경조성 프로그램 운영	-	217개소	217개소
		다문화언어강사 보수연수	-	-	211명
2-2. 한국어능력 향상	2-1-4. 찾아가는 부모 교육 서비스 지원	부모교육서비스 이용자 수	5,375명	5,336명	5,114명
	2-2-1.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유	한국어교육 대상자 수	30,611명	36,673명	-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	-	232개소
		한국어교육 확대	3종 6권 개발		-
		프로그램 운영 횟수	-	4회	3회
	2-2-2. 다문화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과목 운영교	80교	100교	124교

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성과		
			2014	2015	2016
2-3. 학교생활 초기 적응 지원	2-3-1. 초등학교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다문화 유치원 운영	-	30개원	60개원
	2-3-2. 예비학교 전국 운영	예비학교 운영교 수	80교	100교	124교
	2-3-3. 자녀생활서비스 지원	자녀생활서비스 이용자 수	4,346명	4,748명	5,107명
	2-3-4. 초기적응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Rainbow School 프로그램 참여자 수	1,003명	1,287명	1,538명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4-1.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멘토링 학생수	6,000명	5,288명	5,288명
	2-4-2. 진로 · 진학지도강화	프로그램 참여학생수	634명	1,244명	1,339명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2-5-1.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	입학절차 안내 및 중도입국자 자료제공	79명	85명	112명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17개	17개	-
		학력심의위원회 담당자 워크숍 실시	-	-	1회
	2-5-2. 각종 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 기회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달	1회	14회	-
	2-5-3.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 포함	다문화청소년의 상담건수	11,651건	13,810건	17,680건
5-4. 학교에서의 다문화이해 제고	5-4-1. 일반학생-다문화 학생 간 상호 이해 교육 강화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	-	180교
		다문화학생 이해교육 프로그램 제작	1건	-	-
		포럼 및 우수사례 발굴	-	1회	-
	5-4-2. 다문화 교육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보육프로그램 보급여부	전자책 1종 개발	보급완료	-
		커리큘럼 개발 수	2종(일반인 및 대학생)	-	-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개발 보급	개정판 보급	100%보급	-
		교과서 개발 및 보급	초등 2종, 중학교 11종 보급완료	초등 1종, 고교 4종 보급완료	초등 1~2학년 개발완료
	5-4-3.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및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	다문화 꾸러미 개발	개발건수	1건	1건
			대여운영 건수	160건	220건
			교육운영 건수	55회	67회

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성과		
			2014	2015	2016
	5-4-4. 교원의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	다문화 이해역량 강화 연수 개설	17개	17개 교육청	-
		연수참여자 수	43,000명	66,721명	118,911명

※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5).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7).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7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정책

(1)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정책 현황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추구라는 네 가지 비전하에 추진되는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6, p. 3). 전체적으로는 5대 영역의 15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다문화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1-2의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이다.

첫 번째 1-2의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는 크게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하는 과제와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을 개발 및 활용하는 사업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영역인 3-1의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는 전반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둔 계획들로 3-1-1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가족교육, 이중언어교육, 자녀생활지원서비스 확대,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확대,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국제교류 등 일정 비율을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3-1-2는 이주배경청소년 종합지원체계 확립, 다문화가정 학생 제도교육 진입지원 강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비진학 및 탈학교 이주배경청소년 사회 적응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의 권리침해 보호를 위해 불법근로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입영연령 도달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3-1-1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확대’의 내용과 3-1-2의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 강화’의 내용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하나의 영역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표 II-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다문화 관련 계획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1-2.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1-2-1.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일반 청소년	-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수련시설 등에 보급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 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1-2-2. 다문화프로젝트 추진	이주배경 청소년	- 국가 간 교류, 지자체 교류, 기관 및 단체 국제 교류 시 이주배경 청소년 인력을 활용하여 외부 인사 영접 및 통역 등의 역할 수행 -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풀 관리 운영 모델 개발	여성 가족부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3-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실시(다문화 이해 교육, 가족 교육, 부모자녀 교육 등) - 이중언어교육 강화(이중언어강사 양성 확대) - 다문화가족자녀생활지원서비스 확대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에 일정 비율은 다문화청소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 가족부, 교육부
	3-1-2.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 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지원체계 확립 - 다문화가정 학생 제도교육 진입지원 강화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비진학 및 탈학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 적응 지원 - 이주배경 청소년의 권리침해 보호를 위해 불법근로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 이주배경 청소년 입영연령 도달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여성 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 노동부, 국방부

※ 출처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p. 358의 수정

(2)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성과는 계획한 사업의 양적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서 매년 수혜대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선별적 접근보다는 ‘청소년’이라는 통합적 접근으로 가되, ‘다문화’라는 것이 차별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정책은 기존의 부처나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선별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물론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나 부처별 정책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 관계부처가 모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중심을 잡고 선도해나갈 수 있는 시각과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다문화청소년보다는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배경집단 전체가 대상이고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써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주제적 시각에서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첫 번째 ‘글로벌·다문화역량 강화’는 특별히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지원계획은 아니나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다수자들의 다문화역량강화 및 다문화인식개선을 통하여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과제로 생각된다. 다문화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친선대사를 양성하여 국가 간 교류나 지자체 교류, 기관 및 단체의 국제교류시 이주배경청소년의 인력을 활용하여 외부 인사 영접 및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청소년 중 어떤 청소년을 타겟으로 구성된 계획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국가 간 교류 등의 자리에서 통역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며 전문적인 업무인데, 막연하게 이주배경의 청소년들은 두 나라 말을 모두 잘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두 개의 언어를 잘 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청소년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인력풀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3-1은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인데,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여 앞에서 이미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3-1-2의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의 과제 역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공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다만 ‘이주배경 청소년의 권리침해 보호를 위해 불법근로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비진학 및 탈학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그리고 ‘이주배경 청소년 입영연령 도달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등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문화청소년 중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 제시된 2014년과 2015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나타난 성과를 살펴보면 ‘이주배경 청소년의 권리침해 보호를 위해 불법근로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고,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과 마찬가지로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중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수용성지수를 점수화한 것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무지개다리사업 참여자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제시한 것이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2015년 기준 목표치가 56.56점인데 비해 60.75점으로 약 4.19점 상향 달성하였다. 그러나 3년을 주기로 조사하도록 되어있어서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정도를 보는 데 있어 다소 둔감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2년을 주기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무지개다리사업’의 경우는 다문화와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소수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고 함께 나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사업과 달리 ‘다문화’의 ‘문화’개념을 ‘문화예술’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사업참여자의 만족도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다문화수용성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가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만족도 이외에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수용성이 증진되었는지 등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8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다문화 관련 계획의 성과

과제	세부과제	성과지표	성과	
			2014	2015
1-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1-2-1.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 국립수련시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	6회
		•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학교 수 [여성가족부]	23개교	30개교
		• 다문화수용성지수 [여성가족부]	—	60.75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무지개 다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문화체육관광부]	85점	86점
	1-2-2. 다문화프로젝트 추진	• 청소년 활동지원(청소년 국제교류) 다문화 및 이주배경청소년 참가율 [여성가족부]	2.2%	1.9%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3-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청소년 활동지원(청소년국제교류)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소년 참여율 [여성가족부]	8.8% (소외계층대 비 참여율)	1.9%
		• 언어발달 지도사 수 [여성가족부]	300명	300명
		•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 프로그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시범운영 실시	본사업으로 전면 시행 (217개 센터)
		• 청소년참여기구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 참여가이드라인 마련 [여성가족부]	완료	—
		• 중점학교 수 [교육부]	120교	150교
		• 글로벌브릿지 운영사업단 수 [교육부]	10개	17개
	3-1-2.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 레인보우스쿨 참여자 수 [여성가족부]	1,003명	1,287명
		• 무지개Job아라 참여자 수 [여성가족부]	124명	140명
		• 다문화예비학교 수 [교육부]	80개교	100개교
		• 중도입국 자녀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수 [법무부]	78명	148명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교육 횟수 [국방부]	28회	81회
		• 군내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수 [국방부]	20명	23명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15).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16).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3)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정책

(1)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정책 현황

다문화청소년정책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경우도 2017년 현재 제2차 계획까지 수립된 상태이고 그 중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정책목표인 '2.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과 세 번째 목표인 '3.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2-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과 3-2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가 가장 관련되는 내용이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목적에서 나타나듯이 그 대상이 외국인인 만큼 다문화청소년 전체를 고려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민배경자녀의 한국어, 공교육진입, 진로교육, 직업교육, 이중언어환경 등 기본적으로 '외국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한국사회적응에 관련된 각 부처의 사업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9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중 다문화청소년정책 관련 내용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처
2-4.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4-1. 이민배경자녀의 초기적응 지원	① 이민배경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문체부, 교육부
		②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	교육부, 법무부
		③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법무부, 교육부
	2-4-2. 이민배경청소년의 진로·진학지도 강화	①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Rainbow School' 운영	여가부, 문체부
		② 이민배경 청소년의 직업교육 강화	고용부, 교육부
		③ 이주배경 청소년의 참여 및 교류 비율 가이드라인 마련	여가부
		④ 지역사회에서의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확대	여가부
		⑤ 이민배경 청소년의 진로·진학상담 활성화	교육부
	2-4-3.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부
		②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정착	교육부
		③ 결혼이민자 학부모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활용	복지부
		④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교육부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처
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2-1. 문화다양성 이해제고	①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문체부, 법무부, 여가부, 농식품부
		② 초·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교육부, 문체부
		③ 부처간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협력체계 구축	문체부, 법무부

※ 출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을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2)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 및 성과를 살펴보았을 때 역시 매년 계획한 사업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을 성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나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과 다르게 눈에 띄는 차별성은 문화다양성 이해제고에 대한 이해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다문화이해교육 등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의미할 때는 협의의 문화나 예술을 의미하기 보다는 반차별, 반편견, 인권존중 등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 내용이 협의의 문화개념, 즉, 문화교육이나 예술에 대한 교육을 문화적 다양성교육으로 여기고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이해교육과는 접근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대상과 지향점 자체가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외국’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사회의 다양한 다문화집단 청소년의 교육, 복지, 또는 다문화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계획으로써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10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성과

중점과제	세부과제	성과지표	성과		
			2014	2015	2016
2-4.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4-1. 이민배경 자녀의 초기적응 지원	• 한국어 과목 운영학교 수 [교육부]	100교	100교	—
		• 예비학교 운영 수 [교육부]	80교	100교	124교
		• 중도입국청소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 [법무부]	—	148명	93명
		• 교육자료 개발 수 [문화체육관광부]	6식	1식	—
	2-4-2. 이민배경 청소년의 진로진학 지도 강화	•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 수 [교육부]	2교	2교	—
		• (신규)다문화 직업교육 지원기관 운영 수 [교육부]	—	—	24개
		• 전제아동복지교사 대비 결혼이민자교사채용 비율/수[보건복지부]	0.9%	0.8%	33명
		• 이민배경청소년입학을 : 입학생수/입학정원 [고용노동부]	100%	100%	100%
		• 이민배경청소년진급률 : 진급자수/진급정원 [고용노동부]	94%	89%	96%
		• 이민배경청소년취업률 : 취업생수/취업정원 [고용노동부]	—	90%	67%
		• Rainbow School 참여 청소년 수 [여성가족부]	1,003명	1,287명	1,538명
		• 소외계층 청소년 중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류 참가 비율 [여성가족부]	11.5%	8.2%	11.6%
		• CYS-Net 서비스 수혜 이주배경 청소년 수 [여성가족부]	1,197명	1,039명	—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CYS-Net 지원서비스 수 [여성가족부]	—	—	17,680건
	2-4-3.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학교 수 [교육부]	•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학교 수 [교육부]	120	150	180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자료 탑재 학교 수 [교육부]	46	45	42
		• 이중언어강사 심화연수 운영 기관 수 [교육부]	9	9	—
		• 이중언어강사 보수연수 인원 [교육부]	—	—	220

중점과제	세부과제	성과지표	성과		
			2014	2015	2016
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2-1. 문화 다양성 이해제고	• 교원 다문화교육 연수 이수자 수 [교육부]	43,030명	66,288명	118,911명
		• 정책포럼 개최, 협력추진 등 실적 [법무부]	9회	10회	10회
		• 교육 참여자 만족도 [문화체육관광부]	81.05점	91.0점	90점
		•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수 [문화체육관광부]	110관	125관	127관
		• (다문화가정/다문화 미술관 소풍) 프로그램 참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451명	342명	279명
		• (문화다양성 교육 등 4종) 프로그램 참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1,286명	—	—
		• (공감이 있는 미술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	889명	1,457명
		• (조각공원 9경가요) 프로그램 참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	387명	—
		• (도란도란 작품 숲 이야기)프로그램 참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	—	301명
		• (한국문화를 느끼다)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93회, 4,034명	101회, 4,319명	90회, 3,162명
		• (문화로 다함께)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20회, 409명	8회, 224명	12회, 283명
		• (외국인 교사, 외국인 학교)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	—	12회, 409명
		•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문화체육관광부]	85점	86점	87점
		• 법률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식	—	—
		•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지연	—
		• 전문가 회의 및 연차보고서 작성 관계자 설명회(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	—	6회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2017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 주요 부처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 분석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 다문화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정책

교육부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대책’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다문화교육지원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어 있다. 2006년 초기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수립 당시는 정책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이 교육부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초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을 보통의 청소년들과는 문화적으로 다른,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외국인에 더 가까운 집단으로 보고 이들을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현재는 명칭 자체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으로 변경되었고, 내용적으로도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다수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의 강화’로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다문화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고 모든 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정책이 진일보한 점은 과거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집단의 다양성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문화’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대상화 하여 각종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현재는 다문화학생을 국내출생과 해외출생을 구분하고, 해외출생 중에서도 중도입국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를 구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공교육에 진입했을 때 필요한 지원과 적응 및 발전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정책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이고, 두 번째는 학교구성원의 다문화이해제고, 세 번째는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기초학력과 정서상담지원, 그리고 진로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이들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다문화이해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제고하는 기초작업을 하며, 이를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전체와 함께 다문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다문화교육지원 계획을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과제별 사업들은 표에 제시하지 않았고 본문에 설명으로 제시하였다.

표 II-11 2017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

핵심과제	세부과제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유치원 확대 ■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다문화학생 정서상담 지원 ■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
2.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 교원 역량강화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강화 ■ 다문화교육 정책 홍보 및 자료 공유
3. 다문화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범부처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 지원 ■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구축

※ 출처 : 교육부 (2017): 다문화교육 내실화방안(안) (내부자료). 세종: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팀, p. 7 수정.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큰 틀 내의 사업들을 보면, 첫 번째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의 세부과제 중 첫 번째는 다문화유치원의 확대가 있다. 다문화유치원의 목적은 다문화배경을 지닌 유아들 중 언어발달이 부족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통해 초기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고, 다문화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의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시킴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 다문화유치원 사업은 2015년에 시범적으로 전국 30개원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에 전국 12개 시도의 60개원으로 확대되었는데, 2017년에는 좀 더 확대되어 전국 90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유치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언어발달이라는 것이 중요한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 만큼, 다문화배경의 유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유치원 시기에 적절한 언어교육을 통해 언어발달을 촉진시켜 학교에 입학한 후 학습언어 발달에서 비(非)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과제는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으로 이는 주로 ‘다문화멘토링’사업으로 대표되어 왔다. 다문화멘토링사업은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하기보다는 한국장학재단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0년부터 전국의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멘토링을 하도록 시작한 사업이다. 2010년 당시 전국의 13개 대학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2016년에는 전국의 99개 대학이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 매년 확대되어 왔다. 이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다문화학생의 수도 2011년 4,071명에서 2016년 5,132명으로 증가되었으나(한국장학재단, 2016), 전국 다문화학생의 수가 2016년 현재 9만 9천 여 명으로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모든 다문화학생이 멘토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연동하여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대학이 있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부근의 지역에서만 가능하여 사실상 농산어촌 지역의 다문화학생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멘토링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과제는 공교육 진입 및 적응지원으로 이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이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주제이다. 과거에는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한국의 일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문제였으나, 현재는 거소증명만으로 입학이 가능하고, 입학을 한 후에는 다문화예비학교에서 정규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예비학교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12년 당시 전국에 25개교에서 시작되어 2016년까지 전국에 11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양계민 외, 2017, p. 68). 다문화예비학교는 국외출생 다문화학생의 학교진입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는데, 다문화예비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수가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학교를 예비학교로

지정하다보니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예비학교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없다는 문제, 교육과정이 아직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양계민 외, 2017, p. 69-70). 따라서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의 경우는 개별학교를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하여 다문화예비학급을 운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수가 비교적 적어서 하나의 학급으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는 2016년부터 ‘찾아가는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교육 진입 및 적응지원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도 필요하다. 전술하였듯이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국내 거소증명만으로 공교육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거소증명 외에도 학력증명의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의하여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으로 하여금 학력심의회를 통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력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실제로는 학력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비율이 낮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한정하고 있는 학력심의 대상이 ‘다문화학생’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다문화가족 및 자녀와 관련한 법률에서는 ‘다문화학생’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지칭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은 그 대상 자체가 모호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인 시·도교육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지닌다.

네 번째 과제는 다문화학생 정서상담 지원으로, 다문화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지역에 소재한 Wee센터를 ‘다문화거점 Wee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특성을 고려한 정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전국의 3개 시도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는 본 연구에서도 꾸준히 조사되어 왔다. 2016년도 본 연구의 연구결과(양계민 등, 2016)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과 학부모, 교사 집단 모두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의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다문화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하여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정서 요인을 다루어줄 필요성이 더욱 증가된 현실에서 나타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체계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지원계획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반영도가 높은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상담이라는 것은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한 별개의 분야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상담에 다문화상담의 요소를 포함시킬 문제이기 때문에, 다문화거점 Wee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기 보다는 전체 청소년상담교사 및 상담전문가들에게 다문화상담에서 갖추어

야 할 요소를 교육시켜서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특히 사춘기의 민감한 청소년들이 별도의 ‘다문화’상담센터를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에 전반적인 상담교사 및 청소년상담전문가 대상 교육방안 및 다문화상담 확산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교육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학생 중 과반 이상의 다수가 국내 출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이 호소하는 심리·정서적 문제가 학생이 가진 다문화적 배경으로 야기된 것인지 사회·경제적 문제와 같은 가정환경의 문제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가정과 그에 근거한 상담절차의 마련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중 마지막 과제는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강화’인데, 크게 ‘다문화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글로벌브릿지사업’, 그리고 ‘이중언어교육’을 들 수 있다.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은 2014년 전국에 10개 기관을 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시작하였고, 2015년 15개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7년 17개 학교에 직업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희망하는 다문화학생(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호직업 분야 중심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강학생의 수강료와 실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job아라’ 등이 있기는 하나 실제 참여자의 수는 매우 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학교를 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수준이 담보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아직까지는 내용적으로 볼 때 주로 바리스타, 제과제빵, 네일아트, 커피테일 만들기, 요리, 컴퓨터교육 등의 단순기능직 또는 일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수준의 단기간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이를 통해 실제 직업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진로·직업교육이 왜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대응논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대로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개발분야의 또 다른 사업으로 글로벌브릿지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사업 초기 당시에는 다문화학생 중 잠재능력이 있는 영재를 선발하여 대학에서 영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키운다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이 다문화청소년의 부족한 역량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여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던 것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의 강점에 초점을 두어서 지원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다. 글로벌브릿지사업은 2010년도 광주교육대학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글로벌브릿지’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도부터였다. 2011년 당시 4개 대학에서 총 16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후 점차 참여대학이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전국 20개 대학에서 수학·과학, 글로벌리더십, 언어, 예체능 등 4개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브릿지사업의 장점은 다른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또는 방과후프로그램과 달리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당초 목표하였던 영재교육과는 거리가 있고,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것을 직업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브릿지사업의 장점을 활용하되 질적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중언어교육은 다문화학생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부모나라의 언어를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나 방과후학교를 활용하여 배우고, 이를 가정에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추후 부모나라와 한국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막연한 생각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가정 아이들이 구사하지 못하는 부모나라의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이들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를 위하여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교육부장관상을 시상하는 등 다문화청소년들이 이중언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내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수행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한 학교 내에 부모의 국적이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나, 다문화언어강사를 학생 부모나라 언어의 수만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한명의 강사가 파견되어 한 가지 언어를 가르치고,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들이 섞여서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는 부모나라 말을 배우고 가정에서 연습을 함으로써 이중언어를 구사하도록 하겠다는 기획과는 달리 파견된 강사의 언어를 제2외국어를 기초 수준에서 배우는 것에 가깝다. 사실상 학교의 이중언어교육은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독려하는 형태의 간접 교육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부모교육과의 연계 및 지역사회중심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학교구성원의 다문화이해 제고

지금까지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둔 과제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 핵심과제는 ‘학교구성원의 다문화이해제고’이다. 세부과제로는 ‘다문화이해교육강화’, ‘교원역량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 ‘다문화교육 정책 홍보 및 자료 공유’ 등 총 네 가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인 ‘다문화이해교육 강화’사업은 ‘다문화중점학교’사업이 가장 중심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중점학교’는 ‘친다문화적 학교환경조성’을 목표로, 학교구성원 모두의 다문화이해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사업이다. 따라서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다문화교육주간 운영 등 일상생활에서 다문화에 대해 친근감을 높이고 반차별, 반편견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중점학교는 20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6년에 180개교, 2017년에는 200개교로 매년 확대되어 왔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햇수로 12년째이고 양적으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교육부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도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10여 년 간 수행된 결과의 축적도 역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향후 이 사업은 사실상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다문화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만큼 한국 다문화정책에서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청소년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이 다문화중점학교라는 형태로 가야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향후 다수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발전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더욱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세부사업은 ‘교원 역량강화’인데, 사실상 학교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교원연수를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2017년도부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개정하여 ‘교직실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육봉사활동’에 다문화교육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2017, p. 69) “사회변화와 교육영역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등의 계획 수립, 운영의 실재를 다루는 내용,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포함하여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의 내용에는 “③ 학생생활문화는 학생의 생활과 다문화학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문화의 조성,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지도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실습영역의 교육봉사활동의 기본교수요목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교원자격검증 실무편람에 다문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교육부에서 교원의 다문화 역량강화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고, 다문화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한 단계 진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실무라는 과목의 성격상 다문화이해교육과는 완전히 맞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육실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경영, 학사·인사·행정실무 등 다소 행정적이며 실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중 사회변화와 교육영역의 부분에서 다문화이해의 부분을 다룰 수 있는데, 대학마다 교육실무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만큼 위에서 언급한 행정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직실무라는 하나의 과목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중요한 진보인 동시에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현재 교직실무에 포함시킨 것을 시작으로 점차 보다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예비교사 다문화이해교육과정이 개발 및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에 ‘현장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실적’ 중 현장역량 교육과정의 예로 ‘다문화교육’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10여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원양성기관에서 다문화교육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적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예비교사의 역량강화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현직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강화의 부분이다. 이는 현직 교원들의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민감성 증진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교원 대상 다문화이해연수를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연수 15시간, 심화연수 30시간을 이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특히 학교 다문화이해교육에서 교장(감) 등 관리직 교사들의 이해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관리자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15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로진학상담 및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직무연수에 다문화이해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상담 및 심리상담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교원연수 이수자의 수는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점차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확대만큼 질적 수준이 담보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은 지역의 전문가들 또는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나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나 교수, 또는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구체적인 주제는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지만 그 내용은 강의를 하는 전문가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고, 교원 대상의 다문화이해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기초적인 내용이 제공되기도 하고, 강사별로 거의 유사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다루기도 하여 전반적인 연수과정에 대한 방향과 원칙이 필요하고, 교육의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학부모 교육강화로,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를 9개 국어로 번역하여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족센터,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학교 입학과 진학에 대한 내용을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을 위한 콜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일반학부모의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에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교육 제도와 진학정보’라는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이는 학부모 및 교사, 현장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다문화학부모 역량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 대한 강화방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도움이 되는 자료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개발의 의미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대상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정책 홍보 및 자료 공유를 위해서는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를 통해 다문화와 관련된 체험활동과 정책포럼 및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하고,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된 우수사례를 일반 교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발간하고 다문화교육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3) 다문화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교육부 정책의 세 번째 영역은 ‘다문화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그 중 첫 번째 과제는 범부처·유관기관 협력 강화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 공교육진입을 위한 학교 안내 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한 중도입국청소년 중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교육 및 자녀지원 서비스를 교육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안내하여 필요한 경우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내리기 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다문화교육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함으로써 다문화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의 책무를 강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지역별로 지역 내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사업추진 담당자는 매년 변경되는 현실이고, 교육부의 담당자 역시 거의 매년 변경이 되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장기적으로 이해하며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정책의 전달 및 추진체계로 활용하고 있는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역시 계약직 직원들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이기에 다문화교육지원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방향과 원칙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매년 발전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고, 그 때 그 때 담당자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문화정책이 10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정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체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고 방향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이었으나,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진체계로 하는 ‘다(多)재다능’프로그램이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사업들은 학교밖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다(多)재다능’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같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다(多)재다능 프로그램과 무지개청소년센터 사업을 각각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다(多)재다능' 프로그램

'다(多)재다능'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다문화가족학령기 자녀 및 부모, 중도입국청소년 등으로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다는 점에서 대상의 범위는 교육부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의 규모 면에서는 교육부 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多)재다능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17,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pp. 264).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101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개소를 합하여 총 107개소이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크게 수요자 발굴·초기면접, 부모·자녀관계 향상프로그램, 사회성발달프로그램, 미래설계프로그램, 위기사례 지원프로그램,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 진로지원, 심리치료 등 생활적응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지역사회 학교나 청소년유관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레인보우스쿨,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다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기획한 의도대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시스템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12 여성가족부의 다(多)재다능 사업 내용

프로그램구분	내용	
수요자 발굴· 초기면접	대상자 발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자녀 대상 홍보 ■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으로부터 대상자 연계

프로그램구분	내용	
(설계)	초기면접	■ 청소년 상담 • 면접: 내담자의 기본정보, 주요문제, 가족관계 등 정보수집/초기 면담자료 작성 • 학습수행수준, 개인역량, 진로정보 • 대인관계능력, 자아정체감, 다문화가족인식 • 스트레스유발요인, 자아존중감, 역기능적 패턴, 초기면접지(청소년용), 다문화 청소년·가정 건강성척도 측정 등
		■ 부모상담 • 면접: 내담자의 기본정보, 주요문제, 의뢰경로, 가족관계 등 정보수집 •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친밀감 • 부모상담 유형분류 면접지(부모용)
	사정평가	■ 유형별(위기/일반) 개입연계 프로그램 판정 • 전문화된 면접과 도구를 활용하여 상담, 개입방법을 결정 •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지원프로그램(심리치료, 심층상담, 진로코칭, 자기역량 개발, 부모교육/부모상담, 가족상담) 유형을 결정
심리치료 상담	심리상담	■ 청소년, 부모 개별 상담 및 가족상담 • 스트레스 유발요인, 자아존중감, 가족 상호작용 탐색, 멘토링, 네트워킹 구축 등 •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
	심리치료	■ 심리·정서 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프로그램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레인보우스쿨,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부모·자녀 관계 향상	■ 청소년 대상 • 자아정체성 확립, 이주배경 부모의 국가문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등 ■ 부모교육: 부모역할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부모·자녀의사소통 스킬 습득하기, 갈등관리·감정조절 ■ 가족통합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집단 프로그램 • 가족체계 조망하기, 가족 상호작용 탐색하기, 멘토링 연계하기, 네트워킹 구축하기 • 도구: 가족기능도 등	
사회성발달 (역량강화)	• 사회성진단, 의사소통기술 활용 •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자조모임), 봉사활동, 마음수련 프로그램 등 지원 • 일반학생 참여 체험형 활동프로그램 등 참가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유료, 무료) 등 외부기관 연계	
미래설계 (진로설계)	• 동기부여하기, 자기역량 탐색, 코칭, 지지 등 • 진로소양교육, 직업탐색, 경제교육 등 •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 설계 • 직업체험 활동프로그램 참가 * 고용부 job월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유료, 무료) 등 외부기관 연계	

※ 출처 :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7, p. 247-248)에 제시된 표를 통합 및 수정함.

이 사업이 실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이다. 사업의 안내서에 따르면(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7, p. 267) 사업은 영인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상담업무 담당자 등 기존인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인센티브 추가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보조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들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을 담당하던 기관이 아니고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적응을 담당하던 기관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제시된 사업들은 청소년의 심리상담지원과 관련한 매우 전문적인 영역들을 총 망라해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나 계약직인력이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을 기존의 인력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활용하도록 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결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수요자를 발굴하여 면접하고 상황의 경중을 판단하고, 외부의 전문기관으로 모두 연계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체계의 중심기관이 사안에 대한 전문성 없이 모두 외부기관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설득적이지 못하다. 심리적응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으로 가면 될 문제이지 굳이 다문화가족센터를 거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서비스를 받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입장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도 자신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찾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청소년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구별짓기를 확인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입국초기의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적용하고,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청소년지원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각 기관과 실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심리치료라는 것은 매우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레인보우스쿨,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위에 나열한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 그러한 기관에 대한 연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네 번째는 제시된 내용들이 이미 기존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점이다. 이미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다(多)재다능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각 사업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그 결과 어떤 방식의 사업을 구현해 낼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다. 만일 다문화청소년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청소년사업들에 연계하는 것을 다(多)재다능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다문화청소년들을 전문적 차원에서 다룰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이라고 한국가정출신의 비(非)다문화 청소년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청소년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들만이 경험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성을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갖추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내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시스템을 갖추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례를 발굴해서 연계하도록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기관에 대한 다문화교육 등 전문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의 문제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그 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지원사업

그 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면 크게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한국어 교육은 만 19세 미만의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정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의 대상을 중도입국청소년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으로 다문화예비학교나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레인보우스쿨 등이 있으나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질관리를 한다면 중도입국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과는 조금 다르게 언어발달사업도 있는데,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자녀들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의 발달정도를 평가하여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7, p. 205). 이 사업은 교육부의 다문화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언어발달교육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다문화유치원의 경우 학령기 이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만 12세의 초등학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 넓고,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언어교육이라는 점에서 다문화예비학교의 사업과도 차별화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의 경우는 기존의 언어영재교실을 2014년부터 개편한 사업으로, 교육부의 이중언어교육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조정되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중언어 자체를 교육하기 보다는 가족 내 이중언어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신, 교육부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된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7). 구체적 내용으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 동화나 동요 등의 활용방법)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 사업은 모두 한국어나 언어발달, 이중언어 등 언어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녀생활 방문교육의 경우는 만 3세에서 12세 이하의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독서코칭,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언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에서 나아가 학교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령기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습지원사업으로는 교육부의 '다문화멘토링'사업이 있지만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멘토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한 한계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방문교육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초등학교학생까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 점을 지닌다. 실제 학습지원의 경우는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서비스 중 자녀지원사업

사업	이용대상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만 19세 미만 중도입국자녀	수준별 정규 한국어교육(1~4단계, 각 100시간) 및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화과정(특별반)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방법 안내 등 서비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 동화·동요 등의 활용방법) 코칭 서비스 등 제공
방문교육 (자녀생활)	만3세~만12세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독서코칭,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출처: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20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소개,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7&pageSeq=1180>에서(인출일 2016. 12. 30); 양계민 외(2017), p. 125 재인용

(3) 무지개청소년센터의 각종 사업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이주배경청소년 입국초기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 정착사업이며, 세 번째로 다수자 대상 인식개선사업이다. 이 중 첫 번째 영역인 ‘이주배경청소년 입국초기지원사업’은 무지개청소년센터의 가장 중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을 위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정보, 한국어교육, 사회적 관계향상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편입학 지원, 진로지도 등을 통하여 원활한 한국사회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6, p. 24). 사업대상은 9세에서 24세까지의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전국 15개 지역에 23개 레인보우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의 참여인원은 총 1,538명이었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6).

진로지원프로그램은 ‘무지개 job아라’와 ‘내일을 job아라’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지개 job아라’는 직장생활을 위한 한국어교육, 진로소양교육,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등이 운영되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내일을 job아라’는 좀 더 본격적인 직업훈련프로

그램으로 분야별 직업훈련 자격증을 대비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진다. 2016년도 ‘무지개 job아라’에 참여한 참여자 수는 총 121명이고 ‘내일을 job아라’의 경우 대상인원이 총 65명에, 자격증 취득자는 23명에 불과하다. 제공한 프로그램도 바리스타, 메이크업아티스트,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제빵기능사, 그래픽디자이너, 컴퓨터그래픽스 운영기능사 등 한정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성과지표 자체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보다 다양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체험과 진로의식 함양’보다는 ‘자격증 취득자 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과지표가 ‘자격증 취득자의 수’라고 하면 운영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비교적 쉬운 분야를 선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발간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자 23명 중 장기체류 비자취득에 유리한 자격증인 정보기기운영기능사는 2016년 기준 1명밖에 취득하지 못했고, 그 외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이 19명으로 나타났다. 바리스타 자격증의 경우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진로활동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특별히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강점을 가질만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그것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자격증취득에 집중하기 보다는 진로탐색교육을 통한 진로의식 확립 등 조금 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영역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역 정착사업으로는 상담 및 가족연계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생활에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인 상담·사례관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6, p. 71). 대상자별 상담실적을 보면 청소년 중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이 57.3%인 4,245명,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이 3.1%로 233명이었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6, p. 73).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또 다른 상담프로그램으로 ‘마음 돌보기’라고 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합하여 총 8회의 집단상담을 추진하였고, 대상은 총 75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역 정착사업 중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1:1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여 학습, 예체능,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멘토와 멘티를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교육부의 다문화멘토링사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경우 반드시 대학생이 아니고, 20세 이상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의 범위가 더 넓고, 대학생 다문화멘토링과 달리 자원봉사

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영역은 다수자 인식개선사업인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개발한 청소년다문화감수성 증진프로그램인 ‘다가감’을 전국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다가감 프로그램은 총 12차시로 구성된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매우 바람직한 연계가 될 수 있다. 일선 학교의 경우 여전히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단순 음식, 의복, 놀이문화 체험이 다문화이해교육으로 간주되고 있고,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다 할지라도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사업 중 주요 사업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사업은 사실상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주요 사업대상이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보다는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범위와 양적인 부분에서 볼 때 너무나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전체 다문화청소년의 수와 요구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부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전체 학생의 수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학교의 규모는 매우 큰 데 비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사업규모는 너무나 작아서 서로 연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1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

영역	과제
이주배경청소년 입국초기지원사업	■ 레인보우스쿨 ■ 진로지원프로그램 ■ 레인보우체험학교
이주배경청소년 지역 정착사업	■ 상담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 ■ 집단상담프로그램(마음 돌보기) ■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
다수자 인식개선사업	■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다가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정책은 오히려 교육부의 접근이 훨씬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과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업무로 나뉘어져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일원화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다문화청소년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정책”의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 III 장

정책제언

1. 종단연구(2011~2016)의
정책제언 검토
2.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개선방향
3. 다문화청소년정책 및 관련
환경의 SWOT분석
4.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 종합계획: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5. 결 론

제 III 장 정 책 제 언

정책제언에 앞서 우선적으로 그간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정책제언을 영역별로 분석 및 제시함으로써 추진된 부분과 추진되지 못한 부분, 향후 추진되어야 할 부분 등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1. 중단연구(2011~2016)의 정책제언 검토

1) 본 연구(2011~2016)의 정책제언 개요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는 2010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 연구 시리즈’를 시작으로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V’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함으로써, 그 동안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제언 및 정책방안을 제시해 왔다. 2010년도는 예비연구로써 정책방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2011년부터 매년 주제별로 연구가 수행되고 정책과제가 제안되었다. 연도별 주제는 아래와 같다. 2011년도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취약계층 청소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출신국, 교육수준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발달양상이 다르며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 일률적 선별적 지원을 수행하기 보다는 수요자의 특성과 발달수준에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국내출생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복지사업 정책 내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보다는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지역사회 방과후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대상연령층의 확대 필요성, 현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1)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다문화청소년중단조사 연구」 시리즈의 정책제언 내용을 총괄적으로 분석정리함.

연도	핵심주제	정책제언의 주요 내용	
2011년	배경특성별 분석/ 취약계층 청소년과의 비교	방향과 과제	내용
		기본방향	- 수요자 요구 및 특성에 기반한 다문화정책 - 효과성 검증을 통한 기존사업 정리 - 다문화사업 지원대상을 보편적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편입 -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방향의 발달 지원
		추진과제	- 기존 다문화사업의 일반 복지사업 정책 내 편입 - 청소년 방과후사업의 인프라 활용 - 대상연령층 확대 - 다문화가정 어머니 교육의 강화 - 학부모 자치모임 지원
2012년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	기본방향	정책 제언
		분리가 아닌 통합	-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의 법적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 특성이 아닌 일반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일원화된 추진체계 확립	-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 -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재구조화	-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별 프로그램의 다원화 - 수요자의 요구조사에 근거한 정책 수립 -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검토 실시
2013년	학업 및 학교생활	기본방향	핵심과제
		분리가 아닌 통합	- 대상중심에서 서비스중심으로 - 낙인감(Stigma) 방지 방안 마련
		지원과 역량강화의 균형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 다문화청소년의 심라정서적 적응 지원
		지지집단 역량 강화	-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 - 교사대상 다문화역량 강화 -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기관 실무자 다문화역량 강화 -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2014년

심리, 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

전략	핵심과제
다문화청소년의 소외 및 차별방지	• 대상중심에서 서비스중심 제공방식으로의 전환 •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 다문화청소년의 심라정서적 적응 지원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 부모 교육 및 역량강화 •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다문화역량 강화 •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수자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 윤리 강령 제정 • 다문화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2015년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 정체성

전략	영역	정책과제
통합화	언어영역	• 다 수준 KSL 개발 • KSL 전문 인력 양성강좌 • 학교·학교밖 역할분담 • 생애주기별 한국어교육시스템 구축
	학습지원	• 비(非)다문화청소년 통합지원 • 학습부진 원인진단 및 맞춤형 지원
맞춤형	심리적응 지원	• 학교, 지역사회 전반 청소년심리정서 적응 지원강화 •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진로지원	• 중등이상 다문화청소년인구 증가대비 진로교육 대책 마련 • 진로교육의 다양화

2016년

진로의식 및 태도

전략	정책과제
다문화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지지집단 진로지도 역량 강화	•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강화 • 교사 진로지도 역량 강화 •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진로지도 협의체 구성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진로지원 전담서비스기관 지정 운영

【그림 III-1】 그 간 수행된 본 연구(2011~2016)의 연도별 핵심주제 및 정책제언의 주요 내용

2012년도에는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핵심주제가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가 중심이었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유사한 집단끼리 비교했을 때 집단간 차이가 발견된 것은 저소득층이었고, 중간층 이상인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집단과 일반가정청소년 집단과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분리 및 선별에 기초한 다문화정책을 지양하고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제안하였다.

2013년도는 학업 및 학교생활을 주제로 분석을 하였는데, 역시 집단 내 다양한 학교적응양상이 도출되었고, 따라서 발달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분리가 아닌 통합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낙인감 방지를 위하여 선별적 지원보다는 일반청소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되 다문화청소년이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러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대제도를 정밀하게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내용은 거의 한국어와 이중언어, 일회성 캠프나 학습지원, 학습멘토링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응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2014년도는 심리, 정서, 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룬 시기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여전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오히려 상처를 받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발달 프로그램,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제작 및 보급, 다문화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과 정책방안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지지집단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부모 상담, 정보의 제공, 부모자녀관계 증진프로그램 개발, 교사 및 학교 관리자의 다문화 역량강화방안 마련, 다문화교육 전문교사의 양성과 다문화역량의 지속적 축적, 학교다문화사업의 운영지침 및 매뉴얼 제작 및 제공,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다문화감수성 워크숍 및 다문화 역량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결혼이민자의 교육대, 사범대 입학 장려 방안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2015년도는 주요 주제가 정체성이었으나 정책제언은 언어 및 학습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을, 심리적응 및 진로지원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안별로 통합과 맞춤형 전략을 적절히 구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16년은 진로의식 및 태도가 주요 주제였다. 연구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하여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고, 부모의 진로지원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진로에 대한 정보 및 지원의 요구가 매우 높았으나 실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과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역량강화를 위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지집단으로써 학부모, 교사, 청소년진로지도 관련자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본 연구에서 그간 제안한 정책들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지지체계의 역량강화,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정책추진방향, 추진방식, 추진체계, 정책근거마련 등의 7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에는 학습지원, 심리사회적응, 한국어, 리더십, 이중언어, 진로 등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고, 지지체계 역량강화는 부모역량강화, 교사역량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등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그 외 정책추진방향에서는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통합지원과 낙인감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방식에서는 요구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되 수요자의 요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추진체계로는 다문화청소년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내용과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화방안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근거로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다문화가족청소년 통합지원의 근거의 필요성과 통계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 본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제언의 영역별 분류: 연구결과, 추진현황 및 평가

그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제언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본 연구(2011~2016)에서 도출된 정책제언의 영역별 분류

구분	영역		내용
정책의 내용	다문화 청소년 역량 강화	학습지원	• 학습부진 원인진단 및 맞춤형 지원 •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심리사회 적응	• 다문화청소년의 심라정서적 적응 지원 • 학교, 지역사회 전반 청소년심리정서 적응 지원강화

구분	영역	내용
		한국어 • 학교·학교밖 역할분담 • KSL 전문 인력 양성강좌 • 다 수준 KSL 개발
		리더십 •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이중언어 •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진로 • 중등이상 다문화청소년인구 증가대비 진로교육 대책 마련 • 진로교육의 다양화 •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지지 체계 역량 강화	부모 역량강화 •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 •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강화
		교사 역량강화 • 교사 진로지도 역량강화 • 교사대상 다문화 역량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기관 실무자 다문화역량 강화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수자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 윤리 강령 제정	
	정책의 추진 방향과 체계	정책추진방향 •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통합지원 • 대상중심에서 서비스중심 제공방식으로의 전환 • 낙인감(Stigma) 방지 방안 마련 • 다문화가족 특성이 아닌 일반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추진방식 •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수요자의 요구조사에 근거한 정책 수립 •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별 프로그램의 다원화 •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검토 실시
		추진체계 •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전담서비스 기관 지정 운영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협의체 구성 •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화
		정책근거마련 •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에 대한 근거 마련

※ 출처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분석을 정리하여 표로 구성함.

(1)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 정책제언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여섯 가지 영역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학습지원, 심리사회 적응, 이중언어, 한국어, 리더십, 진로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제안의 근거는 아래의 주요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다.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 학습지원 • 비(非)다문화청소년 통합지원 • 학습부진 원인진단 및 맞춤형 지원 •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자원강화	■ 심리사회 적응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학교, 지역사회 전반 청소년심리정서 적응 지원강화
■ 이중언어 •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 리더십 •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 한국어 • 생애주기별 한국어교육시스템 구축 • 학교·학교밖 역할분담 • KSL 전문 인력 양성강화 • 다 수준 KSL 개발	■ 진로 • 중등이상 다문화청소년인구 증가대비 진로교육 대책 마련 • 진로교육의 다양화 •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 본 연구의 주요 결과

표 Ⅲ-2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관련 주요 연구결과

영역	주요 연구결과
학습지원	■ 중학교에 입학 후,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음 (2016). ■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중학교 시기의 학습활동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역	주요 연구결과
	(2017). ■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과 진로지도 지원은 강화될 필요(2016). ■ 단순지원보다는 내실 있는 학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2014).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학습지원경험의 유의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2017) ■ 청소년이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3년간 종단분석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비 지원이 1위로 뽑힘(2016). ■ 학용품 및 급식비 지원과 같은 물적지원경험이 학업관련 변인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2017). ■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정보가 없고, 아이는 학업에 관심이 없는 편임(2013). ■ 학교적응 수준이 낮았다가 점차 높아지는 집단의 경우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나 운동, 요리, 음악, 미술 등 공부 외의 여체능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교 친구들과 잘 지내는 특성(2013). ■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학교의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부모가 학업에 대한 열망은 많으나 정보도 없고, 학원에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어려움을 느낌. 또한 부모에 대한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음(2013).
심리사회적 적응	■ 중학교 진학 이후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2017). ■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중학교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2017).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역량강화나 심리적응 등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은 거의 없음(2012). ■ 자아정체성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2012). ■ 학교교사들은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심리적응프로그램을 꼽았음(2013). ■ 중학교에 가서 정체성 혼란, 사춘기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 필요(2013). ■ 국내의 경우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증진 등 심리적응관련 사업은 거의 없음(2013). ■ 심리상담적응 프로그램, 이혼 등의 이유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필요(2013). ■ 사춘기 반항과 갈등으로 부모와 관계 소원(2014).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응 및 상담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함(2014). ■ 비행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2017).
이중언어	■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이중언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2012). ■ 지속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 집단 청소년은 엄마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열의가 매우 높고, 학업성취도 높으며,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열의가 높고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음. 이중언어도 가정 내에서 스스로 잘 하고 있음(2013). ■ 부모자녀 모두 이중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절실하지는 않으며, 사회적 효용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함(2016). ■ 부모나라 말을 하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여 어렸을 때 배웠어야 했으며, 중학교 연령 시기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안타까워함(2016).

영역	주요 연구결과
리더십	■ 국내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족한 면에 초점(2013).
한국어	■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놀림과 따돌림이 발생함(2014).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에 대한 인식, 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산출됨(2011).
진로	■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장벽 인식 중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2016). ■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 진로의식 및 진로장벽인식은 학교적응과 성적수준과 같은 학교생활요인과 전반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음(2016).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학업성취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부모로부터 받는 진로에 대한 지지요인임(2016). ■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상담은 대부분 진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 됨(2016). ■ 진로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진로상담은 적성검사와 직업 소개가 대부분임(2016). ■ 학교에서 하는 진로교육은 경험이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2016). ■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진로프로그램이 다수(2016). ■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진로지원프로그램 역시 단순, 저숙련의 몇몇 기술에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진로탐색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2016). ■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연구가 필수적임(2016). ■ 중학교 3학년에 들어서 진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상승함(2016).
기타	■ 대부분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실, 이중언어교실, 다문화멘토링 등임(2012). ■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2012).

※ 출처: 양계민 외 (2012), 양계민 외 (2013), 양계민 외 (2014), 양계민 외 (2016), 연보라 (2017)

■ 추진현황 및 평가

표 III-3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영역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학습지원	비(非)다문화 청소년 통합지원	• 기존의 다양한 청소년활동들을 일반가정 자녀들과 구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지원	△	점차통합 추진
		• 통합적 학급지원프로그램 운영	×	—
	학습부진 원인진단 및	•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학습지원의 분리 및 강화	×	

※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X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영역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맞춤형 지원	• 다문화청소년 학습부진 원인규명진단시스템 도입	X	
		• 멘토링 사업의 질관리 시스템 도입	△	
		• 대학에서의 멘토링 관리 강화	X	
		• 대학생 멘토링 사업 멘토 선발 시 다문화이해 교과목이수 필수화	X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가이드라인제공 및 미준수시 패널티 방안 마련	△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 대학생 멘토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수퍼비전, 사업모니터링과 피드백, 정례적 평가	△	
		•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학습코치(교사)멘토링, 온라인멘토링 확대	X	
		• 농산어촌 등 대학생 멘토링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 청소년지도자를 멘토로 양성	X	
		• 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부처별 방과후돌봄사업과 연계협력 시스템 강화	X	
		•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복지 사업에서 학습지원 강화,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보강	X	
		• 청소년 방과후사업을 활용하여 학습지원	X	
		• 고등학생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모델 개발 및 운영	X	
		• 탈학교청소년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모델 개발 및 운영	X	
심리사회 적응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심라정서적 적응지원 방안을 마련	○	
		• 다문화청소년의 심라정서적 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제작 및 보급	X	
		• 다문화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과 정책방안 추진	△	
	학교, 지역사회 전반 청소년	• 학교 상담교사 전문연수 및 교육 강화	○	과정관리 필요

※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영역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심리정서 적응 지원강화	• 상담교사 보수교육 및 양성과정에 다문화학생 상담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	○	과정관리 필요
한국어	학교·학교밖 역할분담	• 학교 밖 한국어교육 방안 마련	×	
		• 예비학교와 레인보우 스쿨 간의 협력	×	
		•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마련	×	
	KSL 전문 인력 양성강좌	• 교사대상 한국어교육 연수과정운영	×	
		•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양성	×	
	다 수준 KSL 개발	• 국내 출생 다문화 자녀, 탈북 자녀, 귀국 자녀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개발	×	
리더십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 중고등학생 다문화청소년 대상 리더십 프로그 램 개발	×	
		• 주도성 강화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이중 언어교육 등 개발 및 실시	×	
이중언어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 이중언어조성사업과 이중언어교육사업의 연계: 이중언어교육사업 내실화	×	
		• 발달단계에 따른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	
		•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이중언어교육 모형 개발	×	
		• 이중언어 재능육성 사업(교육부)을 중고등학 생으로 확대, 질적제고 필요	×	
진로	중등이상 다문화청소년 인구 증가대비 진로교육 대책 마련	• 중학교 이상의 학교급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더욱 강화	×	통합교육이 바람직함
		• 중도입국 청소년대상 진로교육 정책과 사업을 확대할 필요	×	사회적 합의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	○	지원규모 너무작음
		•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탐색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	×	통합운영 바람직
	진로교육의 다양화	• 학교와 지역사회의 직업교육기관 등의 연계가 강화	×	
		• 지역사회 직업교육 경험시스템 강화	×	

※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X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영역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및 서울다솜학교와 같은 직업학교 지원 강화, 외국국적 다문화청소년들의 입학요건 개선	X	
		(국내출생)		
		학교별 연간 진로교육 계획 필수 사업화	X	
		진로·직업·진학정보 등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및 상담 기회 제공	X	
	진로정보 접근성 제고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 지역진로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학생 진로 및 직업 정보 제공	X	
		(중도입국)		
		중도입국청소년 특성 반영한 진로교육 교재 및 매뉴얼 제작	X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X	
		진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무지개Job아라 및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확대 운영	△	
		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체험	X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과정 운영방안 연구	X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시범대나 교육대 입학시 다문화청소년에게 우대가산 부여	○	특별전형에 포함
		이주배경청소년,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대, 시범대 입학 장려 방안 검토	△	청소년의 경우 특별전형에 포함

(2) 지지체계 역량강화

지지체계 역량강화의 필요성은 부모 역량강화, 교사 역량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역량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부모 자신도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교사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도 강하여 교사 대상 다문화청소년

지도 역량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역량강화의 필요성은 직접적으로 연구결과 도출된 것은 아니나 다문화청소년의 지지체계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에서 충분히 확립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관의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지지체계 역량강화

- 부모 역량강화
 -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
 -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강화
- 교사 역량강화
 - 교사 진로지도 역량강화
 - 교사대상 다문화 역량강화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기관 실무자 다문화역량 강화

■ 본 연구의 주요 결과

표 III-4 지지체계 역량강화 관련 주요 연구결과

영역	주요 연구결과
부모 역량 강화	■ 지역사회의 다문화센터 등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의 경우는 매우 긍정적임(2016). ■ 학부모 교육은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함(2016). ■ 학부모 교육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문화가정만 모아서 하는 선별적 학부모교육도 필요(2016). ■ 다문화청소년 기관의 학부모 교육은 실질적이고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2016). ■ 학부모 교육의 내용이 중요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의 필요(2016).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적 가치 차이와 인식개선 필요(2016).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정보부족과 교사교육의 필요성(2016). ■ 학부모교육을 받은 사람은 적으나, 일단 받은 경우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함(2014). ■ 부모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2014). ■ 다문화어머니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에 대한 정보 필요(2013). 〈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 ■ 사춘기가 되는 아이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함(2013). ■ 부모들이 자녀 학업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과 열의는 높으나 한국사회 교육방식 및 정

영역	주요 연구결과
	보부족으로 한계를 경험함(2013). ■ 사춘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2014). ■ 어머니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자녀로부터 소외되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낌(2014). ■ 자녀지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숙제, 시험준비 등 학습관련 부분(2016).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강화〉 ■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과 진로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2016). ■ 학부모들의 경우 학습에 대해 걱정하지만 진로지도나 학습자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고 있음(2016). ■ 학부모가 자녀지도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응답 중 진로관련 부분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남(2016). ■ 자녀의 진로 및 진학관련 학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필요(2016). ■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의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지원행동 수준도 달라짐(2016). ■ 다문화청소년 역시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알고 있는 경험의 범위 내에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2016). ■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취동기, 진로의식이 높고, 진로장벽인식은 낮고,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이나 학교참여 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6).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부모의 교육적 지원, 부모의 진로지원에 대한 자녀의 인식 등이 중요함(2016). 〈부모의 교육수준〉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으로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교육수준이 주요 요인으로 산출됨(2011). ■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차별인식 등이 산출됨(2011).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어머니의 학교행사 및 활동참여, 아버지의 교육수준 등이 산출됨(2011). ■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문화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에 대한 인식, 부모의 양육태도, 언어능력 등이 산출됨(2011).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1).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하기 바라는 비율이 높고, 특히 서울에 있는 4년제 또는 명문대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아짐(2011).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학교 활동 및 학부모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1).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냄(2011).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이라고 하는 이중정체성을 지닌 비율이 높음(2011). ■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숙제 및 학습지도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신감 향상이나 사회성 훈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2011). ■ 부모가 자녀의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 경우 학교적응 수준이 점차 증가

영역	주요 연구결과
	하는 것으로 나타남(2013). ■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진로의식, 학업적 포부, 성취동기, 진로장벽인식 등에서 차이가 남(2016). ■ 한국인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초기 학습활동과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경험은 낮은 경향이 있음(2017)
교사 역량 강화	■ 교사대상 심층면접 결과 교사들이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2013). ■ 교사들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나 실제로는 기회가 없고, 학생들에게 교사가 직접 다문화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2013). ■ 다문화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교사들의 경우 과외로 주어지는 업무로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 구조임(2013). ■ 현재의 교사연수로는 다문화업무를 하는 데 부족함(2013). ■ 해외 사례의 경우 일반 교사들이 다문화적 교실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제공됨(2013). ■ 독일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을 장래의 교사로 키우는 정책을 시행함(2013). ■ 영국의 경우 소수집단 대상 성취장려금 등을 운영하는데, 학교차원에서 장려금을 획득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전담교사를 채용하여 모범적이고 우수한 청소년을 배출하기 위한 개입을 함(2013). ■ 교사,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2014). ■ 다문화사업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2014). ■ 다문화담당 교사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필요 있음(2014).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력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보유한 전문성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201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사업을 하는 데 있어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과 친근감, 전문성은 강점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려할 문제임(2014).
기타	■ 진로지도에 있어 사례관리 필요성(2016). ■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리·사회적 프로그램 만으로는 부족함(2014). 한 아이의 생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사례관리가 필요하고이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기관이 연계를 해야 함(2014). ■ 일반청소년과 통합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춘 전문가는 찾기 어려운 상황임(2014). ■ 성급히 통합하려고 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함(2014).

※ 출처: 양계민 외 (2011), 양계민 외 (2013), 양계민 외 (2014), 양계민 외 (2016), 연보라 (2017)

■ 추진현황 및 평가

표 III-5 지지체계 역량강화 관련 정책 추진현황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영역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부모 역량강화	부모교육 및 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어머니 한국어 학습과 자녀교육을 위한 방안 등을 교육	○	연계방안 필요
		•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서 청소년지도, 부모효능감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	
		• 지역의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	×	
		• 자치적 모임을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 다문화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녀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및 제공	△	참여방안 모색필요
		• 아버지 교육 강화	△	일부지역 운영
		• 자녀 대상 학습 및 진로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	△	내실화 필요
		• 학부모교육 관련 사전요구 조사 후 요구에 기반한 교육 제공	△	요구기반은 아님
		•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부모 상담·진학관련 정보의 제공	○	
		•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 역량 강화	△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강화	•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진로 및 진학 가이드 개발	○	온라인으로 제공됨
		• 다누리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출입국관리소 등 공공기관을 통해 다국어로 만들어진 학교 편입학 정보 및 교육 정보 제공.	○	지속추진 필요
		• 커리어넷, 진로정보 소식지 ‘드림레터’, 팟캐스트 방송 ‘진로레서피’ 등에 온·오프라인 매체에 다문화학생 학부모들이 접근하여 진로정보를 볼 수 있는 코너 마련	○	
		• 연간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적 운영	△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영역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 예비 학부모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	내실화 필요
		• 자녀성장단계별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	
		• 시도교육청 산하 다문화교육센터의 진로상담기능을 강화, 학부모진로상담실 마련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학부모 자녀상담 기능 강화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상담기능 강화	—	
교사역량 강화	교사 진로지도 역량 강화	• 교사대상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	○	
		• 교사 연수 강화	△	
		• 세분화된 맞춤형 진로 연수 프로그램 추진	×	
	교사대상 다문화 역량 강화	• 교사연수 교육과정 표준화 방안 마련 및 내실화	×	
		• 다문화전문교사 양성 후 학교 내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업무 전담	○	
		• 교사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강화	○	교육내용 점검 필요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자 대상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	×	
		• 고용 및 직업 전문 인력 교육 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진로지도 관련 과목 포함	×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의 직무연수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진로지도, 상담사례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기관 실무자 다문화역량 강화	• 청소년 지도자 연수과정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	
		• 청소년지도자 대상 다문화청소년 지도 가이드라인 및 반차별 지침개발 및 제공	×	
		•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다문화감수성 워크숍 및 다문화역량 강화	×	

(3)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은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지역사회 등의 다문화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다문화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적어도 학교 내에서 다문화배경을 지닌 학생에 대해 차별적 언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등의 행동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 근거는 어린 연령시기에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언어나 행동이 나타나고, 다문화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이다.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수자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 윤리 강령 제정

■ 본 연구의 주요 결과

표 III-6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관련 주요 연구결과

영역	주요 연구결과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 다수자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교는 대략 50% 정도임(2014).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수자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 다문화교육관련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2012). ■ 초등학교 다수자 대상 다문화교육의 강화 및 확대 필요(2014).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 윤리 강령 제정	■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놀림은 초등학교 때 일어남(2014). ■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초등학교 때 강하게 시켜야 함.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별로 다문화로 인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으나 어린 시기에 생각없이 한 말과 행동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상처를 받음(2014). ■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초등학교 시기에 감소하다가 중학교 시기에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평균적으로 다문화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2017)

영역	주요 연구결과
기타	■ 국내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족한 면에 초점(2013).

※ 출처: 양계민 외 (2012), 양계민 외 (2013), 양계민 외 (2014), 양계민 외 (2016), 연보라 (2017)

■ 추진현황 및 평가

표 III-7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관련 정책 추진현황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관련업무종사자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	
	•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도 다문화이해교육이 포함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수자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강사인력 양성	○	
	• 기 개발된 청소년감수성 증진 프로그램('다가감')의 현장 적합성 보완,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 지속적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 : 교사연구회의 조직, 자료의 공유	○	
	• 전문강사 훈련 및 파견	×	
	• 해외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워크숍 개최	×	
	• 다문화교육지원 포털사이트 구축 및 관리	○	활성화방안 필요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 윤리 강령 제정	• 국민대상 정기적인 다문화 수용성 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	
	• 청소년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다문화윤리강령 등 제정 및 다문화윤리강령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4) 추진방향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래에 제시된 추진방향과 추진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한 것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 당사자들이 선별지원을 불편해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고, 굳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회의적 태도를 지닌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초등학생 중심의 지원시스템은 부적절하고,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정책사업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정책추진방향

- 대상중심에서 서비스중심 제공방식으로의 전환
- 낙인감(Stigma) 방지 방안 마련
- 다문화가족 특성이 아닌 일반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표 III-8 추진방향 관련 주요 연구결과

영역	주요 연구결과
대상중심에서 서비스중심 제공방식으로의 전환	■ 국내출생자의 경우 일반가정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함(2014). ■ 학교생활적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문화집단은 매우 다양함(2013). ■ 다문화청소년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성향 등에 따라 매우 다르며, 발달의 양상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2013).
낙인감(Stigma) 방지 방안 마련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아이들과 다른 범주로 분류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타인의 시선으로 인하여 차별적 정체감을 의식하게 됨(2012). ■ 다문화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에 대해 학부모 역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별도의 지원으로 인하여 자녀가 의식하지 않던 정체감을 의식하게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임(2012). ■ 주변에서 듣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2012). ■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상처(2013). ■ 다문화 애들을 불러 모아 공부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2013). ■ 다문화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음(2013). ■ 학교의 다문화행사에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불만(2013).

영역	주요 연구결과
	■ 특별히 다문화라고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음(2013). ■ 아이들의 경우 평범하게 되고 싶어 함(2013). ■ 다문화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음(2013). ■ 어려운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음(2013). ■ 장애인과 함께 섞여서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2013). ■ 다문화 애들만 따로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2013).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불쾌함(2014). ■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인하여 비참함을 느낌(2014). ■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차별감과 수치심: 통합지원의 필요성(2014).
다문화가족 특성이 아닌 일반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 거의 대부분 어머니들은 학교 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일반 한국청소년들과 동일하게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었음(2011). ■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청소년의 발달수준에 차이가 나타남(2012). ■ 한국인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발달 변화에 차이를 나타냄(2017). ■ 다문화라는 이유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2012). ■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때 일반 저소득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다문화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2012).
대상자 연령 확대	■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짐(2012). ■ 저소득층 다문화청소년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학습지원대상을 초등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2016).

※ 출처: 양계민 외 (2011), 양계민 외 (2012), 양계민 외 (2013), 양계민 외 (2014), 양계민 외 (2016)

■ 추진현황 및 평가

표 III-9 추진방향과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대상중심에서 서비스중심 제공방식으로의 전환	• 다문화, 비(非)다문화 구별없이 '청소년'이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사업 구성	○	통합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사업임은 드러나 있음
	•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다문화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 및 추가 지원	△	
	• 다문화학생 교육 및 지원방식 운영 원	×	

※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 보급		
	• 다문화학생 통합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낙인감(Stigma) 방지 방안 마련	• 정밀한 다문화청소년 우대제도 시스템 개발	×	
다문화가족 특성이 아닌 일반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편입	×	통합지원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여전히 선별사업
	• 다문화가족기준이 아닌, 저소득층 기준을 적용	×	—
	• 다문화라는 말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	—
	• 지원의 근거를 다문화가 아닌 일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활용	×	—
	• 기본적으로 통합지원을 하되, 다문화청소년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5) 추진방식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요구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그 근거는, 본 연구 결과 현장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강제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보다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다수라는 점, 기존 사업들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참여자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추진방식

-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수요자의 요구조사에 근거한 정책 수립
-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별 프로그램의 다원화
-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검토 실시

표 III-10 추진방식 관련 주요 연구결과

영역	주요 연구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2012). ■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다문화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2012). ■ 원치 않는 프로그램에 강제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음(2012) ■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2012).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집중형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함(2012). ■ 소득계층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름.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도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함(2014).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출신국 등에 따라 발달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2012). ■ 성별, 한국인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발달 변화에 차이가 나타남(2017) ■ 초등연령 때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중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다양한 심리·사회적응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2014). ■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짐(2014). ■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증가함(2014). ■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줄어들(2014). ■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함(2017) ■ 학습의 대한 어려움(2014).

영역	주요 연구결과
수요자의 요구조사에 근거한 정책 수립	■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에 근거하여 정책사업을 구상하는 경우는 극소 수입(2012). ■ 적응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 학부모는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요구(2013). ■ 청소년의 배경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2014). ■ 다문화청소년의 정책육구는 학업지원, 직업 체험 기회 확대, 진로상담 기회 마련 등임(2016).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별 프로그램의 다원화	■ 다문화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2012).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검토 실시	■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처음에 몇 번하다가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로 원래 사업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2012). ■ 기관, 각 사회복지단체, 정치적 지원 등에 따른 무차별적 지원이 난무(2012). ■ 이중언어교육은 목적과 달리 운영되어 예산낭비로 느껴짐(2012). ■ 다문화프로그램의 결과 오히려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기도 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도 함(2012). ■ 무료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중도탈락률이 높음. 따라서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음(2012). ■ 현행 사업들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2012). ■ 이중언어교수요원의 경우 숫자만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중언어교육 환경이 실제로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2012). ■ 한국어교실, 이중언어교실, 다문화멘토링, 학교교사 멘토링 등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학부모들은 실효성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2012). ■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과정 및 현장모니터링이 필요함(2014). ■ 지역 내 투입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예산은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의 심라사회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2014). ■ 다문화멘토링사업의 질적 수준제고와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2016). ■ 농어촌 지역 다문화멘토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2016).

※ 출처: 양계민 외 (2012)...양계민 외 (2013), 양계민 외 (2014), 양계민 외 (2016), 연보라(2017)

■ 추진현황 및 평가

표 III-11 추진방식 관련 정책 추진현황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X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적응수준에 맞는 지원시스템 구축	X	좀 더 체계화할 필요
	• 초기에는 학습지원과 독서지도 등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점차 특기적성이나 체험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	△	
수요자의 요구조사에 근거한 정책 수립	• 수요자들의 요구 수렴절차를 필수적인 절차로 정할 필요	X	
	• 정책의 목표달성도에서 수요자 만족도 포함	○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별 프로그램의 다원화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와 욕구조사를 통하여 요구부합성 점검	X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검토 실시	• 각 부처 다문화사업 대상으로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설문조사, 심층면접,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	△	심도 깊은 평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해당 사업이 실제 수요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	X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	△	평가 엄격하지 않음

(6) 추진체계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다문화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의견, 다문화교육관련 기관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연계체계가 미흡하며, 각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중복해서 추진한다는 점 등의 의견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필요성과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화를 제안하였다. 현재 부처별 중복사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동일한 사업을 부처별로 중복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부처별 사업의 연계는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고,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 전달체계의 일원화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체계

-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전달서비스 기관 지정 운영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협의체 구성
-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화

표 III-12 추진체계 관련 주요 연구결과

영역	주요 연구결과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화	■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어려움. 한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2012). ■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연계체계가 미흡함(2012). ■ 정부의 각 부처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부처간 의견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바람(2012).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함(2012). ■ 지자체와 다문화센터의 소통부족으로 사업이 중복됨(2012). ■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프로그램 신청 접수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대상자의 중복성을 걸러낼 필요가 있음(2012). ■ 국무총리 산하 다문화가족위원회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2012). ■ 국내의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부처간 연계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2013). ■ 캐나다나 프랑스의 경우 지역청소년센터나 정착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의 학습, 언어, 일자리 제공, 진로상담, 심리상담 등을 하되,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함(2013). ■ 예산편성시 원스톱 창구로 지원되기 바람(2012). ■ 다문화사업 운영의 원칙이나 행동수칙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함(201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역 내 학교, 청소년기관,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등이 연계하여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함(2014). ■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을 자립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정책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2014).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간의 원활한 연계로 효율적인 정책 전달과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2014).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협의체 구성	■ 부처 간 연계나 지역기관 간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2016). ■ 지역사회 내 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창업지원센터 등이 진로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

영역	주요 연구결과
	황임(2016). ■ 지역 내 부처간 연계 및 협력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2016).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2016). ■ 교육부, 여가부, 노동부가 유기적으로 연계 및 협력할 필요가 있음(2016).

※ 출처: 양계민 외 (2012), 양계민 외 (2013), 양계민 외 (2014), 양계민 외 (2016)

■ 추진현황 및 평가

표 III-13 추진체계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지원 시범사업 실시	×	체계화 방안 필요
	• 지역사회 다문화기관-청소년기관-학교간의 유기적 연계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전담서비스 기관 지정 운영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전담기관 지정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협의체 구성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협의체 구성	×	

(7) 정책근거

마지막으로 정책의 근거는 법적근거와 통계구축의 필요성으로, 다문화청소년정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기 위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통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정책근거

■ 법적근거

-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의 법적근거 마련
- 다문화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통계구축

-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에 대한 근거 마련

표 III-14 정책근거 관련 주요 연구결과

영역	주요 연구내용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에 대한 근거 마련	■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2012). ■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정책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2012). ■ 탈학교 청소년 및 중도탈락청소년의 통계가 없어서 지원이 제한되고 있음(2012).

※ 출처: 양계민 외 (2012)에서 재구성.

■ 추진현황 및 평가

표 III-15 정책근거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영역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법적근거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의 법적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일반청소년과의 지원정책 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포함	×	
	다문화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청소년다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 다문화이해교육 지원법(안) 연구 및 제정 검토	×	

※ 추진여부: ○표는 추진, △표는 일부추진, ×표는 미추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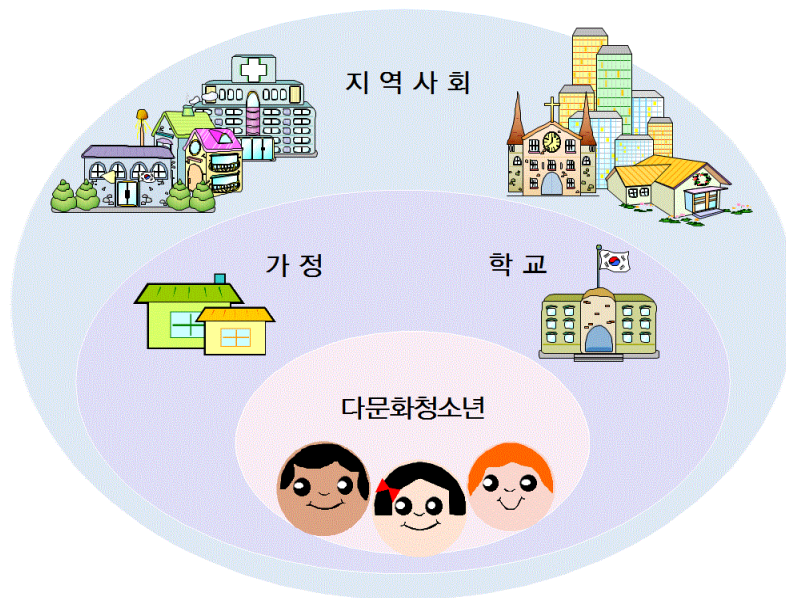
영역	내용	추진과제	추진여부	비고
		• 학교내 다문화교육 체계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통계구축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에 대한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노동자자녀 등으로 특성별로 구분	○	
		•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부 작성시 확인할 수 있는 코딩시스템을 마련하여 통계를 구축	○	
		• 법무부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에 따라 역시 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코딩시스템을 통해 통계를 구축	×	중도입국청소년 개념정리가 선행될 필요
		• 전국적으로 지역별, 유형별로 다문화가족 청소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며 이를 일원화된 중심추진체계가 관리 및 조정	×	

2.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개선방향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각종 기본계획과 정부부처별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살펴보고, 6년 간 수행된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정책제언의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결과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에서 제안하는 것은 각 영역별 과제보다 한 단계 상위의 개념으로써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이다. 각 영역별 과제들에 대한 운영에 앞서 한국의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원칙이 먼저 정해져야 하고, 정해진 방향성과 원칙에 따라 각 과제들이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개선방향과 원칙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태학적 접근

우선 첫째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은 다문화청소년 생태학적 접근에 근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 한국사회 전체의 역량강화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간의 본 연구결과에서도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는 부모요인과 교사 및 친구 등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다문화청소년 자신의 역량강화, 지지집단으로써 부모와 교사의 역량강화, 친다문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등 네 가지 전략 도출의 근거로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그림 III-2】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생태학적 접근

2) 대상자 유형별 사업 구분

두 번째로 한국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으로 다문화청소년 내 다양한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방안을 기획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다문화청소년정책은 실제 다문화청

소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거의 ‘외국인’으로 고정관념화 하고 그 고정관념에 의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이 배경특성과 필요한 요구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단순히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도 반드시 정리될 부분이다. 과거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나,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고 애매하게 ‘다문화’로 묶여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따라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는 일반적인 청소년교육 및 활동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외국출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유형별로 구분된 정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가족정책에서 청소년정책으로

현재 다문화청소년정책은 별도의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 다부처 사업이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학생복지정책과에 다문화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학교밖청소년과에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일부 사업을 다루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일부 사업으로 다문화청소년을 다루는 등 전체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안팎의 다문화청소년을 모두 다루고 청소년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 예로 여성가족부 청소년국 내 이주배경청소년과(가칭)를 구성하는 등 다문화청소년정책을 가족정책이 아닌 청소년정책의 분야로 이관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중앙부처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네 번째는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점차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다문화청소년정책이 국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각 정부부처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과

사업이 정해지고 지역의 시도교육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도 10년이 넘었고, 점차 지역중심의 추진시스템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지역중심의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르고 정책추진여건과 기반이 다른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과 그 외 지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개별지역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둘째,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다문화청소년 정책이 중앙부처에서 시도지역으로 전달되다보니 그 과정에서 기획의도나 추진방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그 결과 기획의도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어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접근이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보다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전제조건은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추진을 위한 중심이 되는 주체의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년 간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제 중앙정부에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사업의 기획의도와 운영의 기본원칙 등을 재정비하여 지역에 제공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다문화 지형의 인식과 분석,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교육적, 복지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 다문화정책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은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체계적 정책연구를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사회적 목표 설정

다섯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사회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이라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모든 다문화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목적과 목표가 이와 동일할 수는 없다.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래 한국사회를 구성할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는 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는 본국과의 관계에서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세계 각국의 친한(韓) 인사를 키워낼 수 있다는 점 등 ‘청소년’이라는 특성이 지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언적으로 ‘한국사회의 통합’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계획의 기저가 되는 한국사회의 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는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교육격차 및 진로격차 감소를 통해 미래 사회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일시거주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시키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친한(韓)인사를 양성하고, 본국과 한국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 한국사회 전체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를 위한 정부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할 경우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반(反)다문화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논리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다.

6) 객관적 자료 및 연구에 근거한 정책집행

여섯 번째로 현재 다문화청소년정책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상태와 환경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근거하여 기획되었다기보다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고정관념, 또는 이론에 기반하여 기획된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정부부처의 경우 매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차년도에 바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사업 효과성의 검증방안 등에 대한 사전연구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 결과 사업의 목적과 명확한 방향 및 운영매뉴얼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부터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많다. 이런 결과 각종 사업들이 겹으로는 추진되고 있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업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운영되게 되고, 그러한 현실에 대해 적절한 통제와 컨설팅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연구를 통해 현 적절한 운영방안을 모색한 후 적용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전연구에 시간이 요구되기에 일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나, 미리 사전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추진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작된 사업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정착시키고 결과를 축적하기에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7) 각종 정책사업의 컨설팅 및 효과성 평가 강화

마지막으로는 각종 정책사업의 컨설팅 및 효과성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진기관이 사업의 고유한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철저한 사전교육도 없이 추진되고, 컨설팅이나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의 고유한 목적과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사업들이 사전에 좀 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미리 컨설팅 내용에 대한 표준화된 요소를 개발하고, 컨설팅 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제공하며, 효과성 검증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컨설팅의 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 진행된 상태에서 컨설팅이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청소년정책 및 관련 환경의 SWOT분석

지금까지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각종 계획과 정부부처의 정책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정책이 관련된 법률에 대해 간략히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과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으나 분명히 장점과 기회요인도 존재하며 이러한 장점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에 대한 SWOT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전략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내부환경요인

(1) 강점(Strength)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강점(Strength)은 10여 년 동안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기반은 마련했다는 점이다. 각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사업들은 이미 요소별로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통하여 비(非)다문화 청소년과의 교육격차 및 진로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원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역시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약점(Weakness)

이에 비해 약점(Weakness)은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 공통의 합의된 원칙 및 방향이 부재하다는 점,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끌고 갈 추진체계가 부재하여 각 부처별로 연계성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사업들이 그 성과를 종단적으로 축적하지 못하고 매년 단기적 사업으로 끝내고 다시 시작되는 점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 기획한 의도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 결과 기획의도와는 달리 자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 사업의 진행된 횟수에 비하여 축적된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 다문화청소년의 결핍에 초점을 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다보니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다문화청소년들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여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이외에는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은 한국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도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외부환경요인

(1) 기회(Opportunity)

외부환경요인으로써 기회(Opportunity)요인은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 다문화이해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점차 친다문화적 가치가 확산되고 다문화수용성이 증진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다문화교육 관련 자료나 연수기회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 교사 등 지지집단의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위협(Threat)

이에 비해 위협(Threat)요인으로서는 사회전반의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반(反)다문화 정서와 다문화청소년지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상태에서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저소득층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하고 있다는 점, OECD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이주배경을 지닌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취나 진로, 직업에서 원주민청소년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결과 등도 외부환경요인 중 위협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응전략

이에 대한 각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S-O 전략

우선 S-O 전략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며,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기회를 강화하고,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지지집단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 S-T 전략

S-T 전략으로는 무조건적 선별적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유형별로 통합 및 선별지원방안을 구축하는 것, 외국인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정책의 원칙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청소년 대상별 요구에 맞도록 세분화하는 작업,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진학지원방안의 다각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위한 지원방안의 다각화, 다문화집단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세금만 가져가는 사회적 부담요인이라는 등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3) W-O 전략

W-O 전략으로는 합의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공통원칙과 기본방향을 도출하는 것,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의 기관별 연계모형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 중앙부처 다문화정책사업에 대한 현장공감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다문화청소년 교육 및 지원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4) W-T 전략

마지막으로 W-T 전략은 현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사업이 목적에 부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의 성과를 추적하여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문화청소년의 결핍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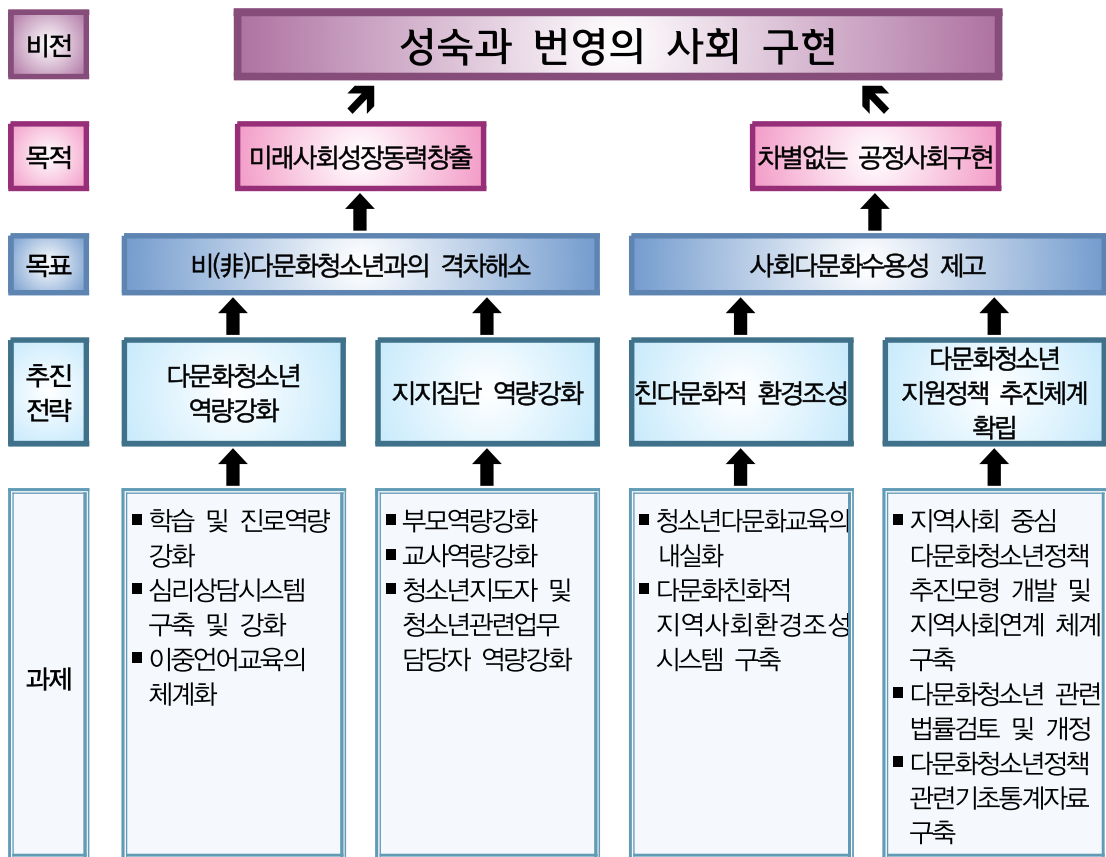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내부환경 요인 ⇨ ⇩ 외부환경 요인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S)
	▶ 정부주도로 강력한 정책추진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기반 마련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시스템 구축 ▶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의 양적 확대 ▶ 다문화청소년의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들의 추진 ▶ 교원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속 확대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원칙 및 기본 방향 부재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중심추진 체계의 부재 ▶ 부처별 연계 부족 ▶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성과의 축적 부족 ▶ 정부주도의 결과 중앙부처와 현장과의 괴리 ▶ 다문화청소년의 결핍에 초점을 둔 지원 사업으로 인한 낙인효과 ▶ 다문화청소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부족
기회 (OPPORTUNITIES)	S-O 전략	W-O 전략
▶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친다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다문화수용성 수준의 증가 ▶ 다문화교육관련 자료 및 연수의 양적 확대 ▶ 부모, 교사 등 지지집단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다문화이해교육의 확대 • 다문화청소년 통계구축 •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지지집단 역량강화 방안 도출	• 합의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공동원칙 및 기본방향 도출 • 다문화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의 지역중심 기관별 연계모형 개발 및 추진 • 중앙부처 다문화정책사업에 대한 현장공감도 제고 • 다문화청소년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위협 (THREATS)	S-T 전략	W-T 전략
▶ 사회전반의 경기침체 ▶ 노동시장의 위축 ▶ 반(反)다문화정서 및 역차별 논란 ▶ 외국인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 ▶ 다문화가정의 낮은 소득수준 ▶ 다문화배경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 진로, 및 직업에서의 불리함(OECD)	• 무조건적 선별적 지원정책 지양, 유형별 통합 및 선별지원방안 구축 • 외국인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정책의 원칙수립 및 사업의 세분화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진학지원방안의 다각화 •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위한 지원방안 다각화 • 대국민 홍보	• 현재 다문화청소년정책지원 사업의 목적부합성 점검 •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의 성과축적을 위한 방안 연구 • 다문화청소년의 결핍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업구조 개선

【그림 III-3】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SWOT분석

4.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 종합계획: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다음으로 지금까지 6년간 연구한 결과와 정책제언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과제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적, 목표, 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III-4】와 같다. 다문화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비전은 ‘성숙과 번영의 사회구현’이고, 이를 위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우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격차해소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목표는 사회다문화수용성 제고로 설정하였다.



【그림 III-4】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비전, 목적,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우선 정책제언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들은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시리즈(양계민 외, 2012, 양계민 외, 2013, 양계민 외, 2014, 양계민 외, 2016)와 양계민 외의 연구(2017)에서도 출되었던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종단연구로 수행되었고, 본 연구자가 지난 연구들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 추진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책제언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추가 및 발전시키고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보다는 기존정책의 내실화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다문화청소년정책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기존의 정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업들을 내실화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사업들을 원래 기획의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부적절한 사업은 정리하고,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내실화하기만 해도 우리사회의 다문화청소년정책은 한 단계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정책제언의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6 본 연구의 정책제언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주무부처
1.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1-1.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1-1-1.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1-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연계 1-1-3. 지역사회 학습멘토링 결연사업 추진 1-1-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진로지도 방안 마련 1-1-5. 한국어교육 내실화	행정안전부 (지자체)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1-2. 심리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강화	1-2-1.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2-2. 청소년상담업무 종사자의 다문화청소년 전문성 강화 1-2-3. 지역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지자체) 교육부 여성가족부
	1-3.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1-3-1. 지역사회 중심 이중언어교육방안 마련 1-3-2. 단계별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개발 1-3-3. 지역사회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	행정안전부 (지자체) 교육부
2. 지지집단 역량강화	2-1. 부모 역량 강화	2-1-1. 다문화가정 부모 연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1-2.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지역연계시스템 구축 2-1-3. 자녀교육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지자체) 교육부 여성가족부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주무부처
	2-2. 교사 역량강화	2-2-1. 교대 및 사대 다문화교육 의무화 2-2-2. 다문화교육전문교사 양성 2-2-3. 교원연수의 표준 프로그램 및 필수요소 개발 2-2-4. 진로·상담교사 다문화청소년교육 표준프로그램 및 필수요소 개발 2-2-5. 학교 다문화청소년 관련 행정처리, 상담, 진로, 학습 지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육부
	2-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관련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2-3-1.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무연수에 다문화이해교육과정 포함 의무화 2-3-2.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다문화이해교육과정 이수 필수화 2-3-3. 청소년관련기관 및 종사자의 다문화윤리강령 제정	여성가족부
3. 친다문화적 환경조성	3-1. 청소년 다문화교육 내실화	3-1-1. 학교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의 필수화 3-1-2. 학교 다문화윤리강령 제작 및 보급 필수 3-1-3. 교과과정 내 다문화이해교육 포함	교육부
	3-2. 다문화친화적 지역사회환경조성 시스템 구축	3-2-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운영 3-2-2.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4.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체계 확립	4-1. 지역사회중심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모형 개발 및 지역연계체계 구축	4-1-1. 지역사회 중심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모형개발 4-1-2.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 지역연계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지자체) 교육부 여성가족부
	4-2.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검토 및 개정	4-2-1. 청소년기본법에 다문화청소년 관련 내용 포함 4-2-2. 학교다문화교육지원법 제정	교육부 여성가족부
	4-3. 다문화청소년정책 관련 기초통계자료 구축	4-3-1. 법무처 공통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정립 4-3-2. 다문화청소년 통계구축	행정안전부 (지자체)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추진전략 1.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추진과제	세부과제
1-1.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1-1-1.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1-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연계 1-1-3. 지역사회 학습멘토링 결연 사업 추진 1-1-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진로지도 방안 마련 1-1-5. 한국어교육 내실화

가. 현 황

- 학업성취 격차는 향후 진로격차를 통해 직업격차, 계층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임.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 높은 비율이 저소득층에 분포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닐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학업성취의 부분임.
- 이에 대한 정부정책은 현재 교육부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거의 유일한데, 전국의 다문화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2016년 10월 기준 5,132명으로(양계민 외, 2016), 2016년 4월 1일 교육부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가 99,186명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5.17%밖에 되지 않는 수치임.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이 위치한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 또는 대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등에 국한되어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수혜 자체가 어려움.
-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비(非)다문화청소년들에 비하여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진로격차와 직업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을 심각하게 다루어줄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능력이 필수적인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의 수준이 학습을 따라가기에 부족하고, 청소년대상 전문강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에 더하여 학교밖의 지역사회 내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마련되고, 청소년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 세부과제

1-1-1.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확대

-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를 매년 확대함.
(2016년 99개 → 2017년 150개 → 2018년 200개 → 2019년 250개)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참여대상자를 휴학생, 대학원생까지 확대

■ 대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모델의 다양화

- 방학 중 집중 학습지도 모형의 강화
(현재는 농산어촌 등 학기 중 접근이 어려운 경우 방학 중 단기캠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학습역량강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형개발 필요)
- 1:1이 아닌 1:N 등의 모델로 다양화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내실화

- 사전교육 강화(다문화교육 필수 이수)
- 멘토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교육청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 관리책임의 주체를 시·도교육청으로 변경하고 멘토 교육 및 관리, 멘토링 프로그램 관리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멘티의 소속학교와 연계하여 관리
 - 한국장학재단은 시·도교육청에서 멘토의 활동 증빙자료를 전달받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역할로 최소화
- 대학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학생의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대학이 패널티를 받는 방안 등)
- 성과축적 및 공유방안 마련 및 실시

1-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연계

■ 다문화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델 개발

-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현재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문화형모델의 수정
-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델 개발
- 경기도 등 다문화형 시범운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과 학교의 연계

- 지역 내 학교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연계를 통해 방과후 학습지원 및 청소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 연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집시기)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전 학교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에 대한 공문전달

1-1-3. 지역사회 학습멘토링 결연사업 추진

■ 지역사회 지자체 중심으로 학습멘토링 결연사업 추진

- 지역사회 내에서 학습멘토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청소년들과 연계하되,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쿼터를 다문화청소년에게 할당
- 학습멘토링 참여 자격에 대한 조건, 멘토링 방식, 의무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학습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한 경우 봉사점수 부여(예: 중, 고등학생)

1-1-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진로지도 방안 마련

(국내출생)

- 학교별 연간 진로교육 계획 필수 사업화
- 진로교육의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 지역진로교육센터 등과 연계
- 일반적인 진로교육에서 통합교육 후 진로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방식으로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 확대 및 다양화
 - 교급별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의 체계화(예, 초등, 중학생: 진로체험 중심/고등학생: 직업체험 중심)
- 지역사회 중심 학교밖 진로탐색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중도입국)

-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교육 교재 및 매뉴얼 제작
 -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체험, 직업체험(인턴십)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별 교재 및 매뉴얼 개발
-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을 통한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1-1-5. 한국어교육 내실화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등)

- 교원 및 현장 한국어 강사 대상의 한국어(KSL)교육과정 이해 연수
 - 현재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제공하여 교사가 직접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어 강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수법에 대한 연수
- 한국어(KSL)교육과정 해례서(설명집) 발간
- 학교 외 다문화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기관에 한국어(KSL)교육과정 확대 적용
-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준교재, 표준 교수법 등 개발 및 보급
- 지역사회 한국어교육 연계시스템 구축
 - 학교, 지역사회 도서관 등이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주중에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주말에는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한국어 말하기 또는 책읽기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계

추진과제	세부과제
1-2. 심라상담지원시스템 강화	1-2-1. 다문화청소년 심라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2-2. 청소년상담업무종사자의 다문화청소년 전문성 강화 1-2-3. 지역 다문화청소년 심라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가. 현 황

- 다문화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심리·상담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2016년 본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상담프로그램 지원은 많지 않음.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상담지원이 일반적인 청소년 심리·상담지원과 별개의 분야는 아니나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더 갖추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세부과제

1-2-1.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상담업무 종사자 대상 다문화청소년 상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다문화청소년 상담 매뉴얼 구성요소 추출 및 내용 구성
 - 다문화청소년 상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청소년상담업무 종사자 직무연수 시 제공 및 교육

1-2-2. 청소년상담업무 종사자의 다문화청소년 전문성 강화

- 청소년상담업무 종사자 대상 다문화 상담교육
 - 청소년상담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다문화상담의 필수요소 등에 대한 연수
 - 청소년상담업무 종사자 대상 다문화청소년 상담사례 연구 워크숍 지원
- 다문화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
(※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독다독 사업의 확대)
 - 상담, 사례관리, 심리치료 등의 연계방안 마련

-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리성장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
 - 자아정체감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자아성찰 프로그램, 자기주장 훈련 등 기존의 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 이해에 바탕을 둔 주제와 접목
 -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리성장 프로그램 성과 축적 및 사례연구 및 결과 발표회

1-2-3. 지역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지원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내 병원 등과 연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심리·상담지원 필요학생 발생시 학교 Wee클래스에서 1차 상담, 문제해결 안되는 경우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 의뢰, 또는 지역 내 전문병원 등으로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에 사례관리 전문가 배치

추진과제	세부과제
1-3. 이중언어교육 내실화	1-3-1. 지역사회중심 이중언어교육방안 마련 1-3-2. 단계별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개발 1-3-3. 지역사회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

가. 현 황

- 현재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중언어를 학습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학교별로 이중언어강사가 한 명 정도 배치되는 이유로 실제로는 부모나라 언어가 아닌 제 2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중언어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배우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강사로 부터 배우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임. 따라서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이중언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사회분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주말 등 학교 외 시간에 다양한 언어강사가 단계별로 수준에 맞는 이중언어교육을 제공하고, 원하는 청소년들이 신청하여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나. 세부과제

1-3-1. 지역사회중심 이중언어교육 방안 마련

- 지역사회 중심 이중언어교육 시스템 구축
 - 이중언어교육을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내 기관끼리 연계협력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교육강좌개설,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강사 제공 등을 담당하고, 학교는 참가자 모집, 청소년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은 장소를 제공하는 등 연계협력방식으로 이중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자조모임을 통한 해당국 언어사용 커뮤니티 개설 지원

1-3-2. 단계별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개발

- 발달단계에 따른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 현재는 학령기 전에는 이중언어조성사업에, 학교 진학 후에는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나, 학령기 이전의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을 언어별로 개발하여 지역 내 유치원 등의 기관에서 강좌 개설
 - 초, 중, 고등학생 연령에 적합한 수준별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확대, 질적수준 제고

1-3-3. 지역사회 내 이중언어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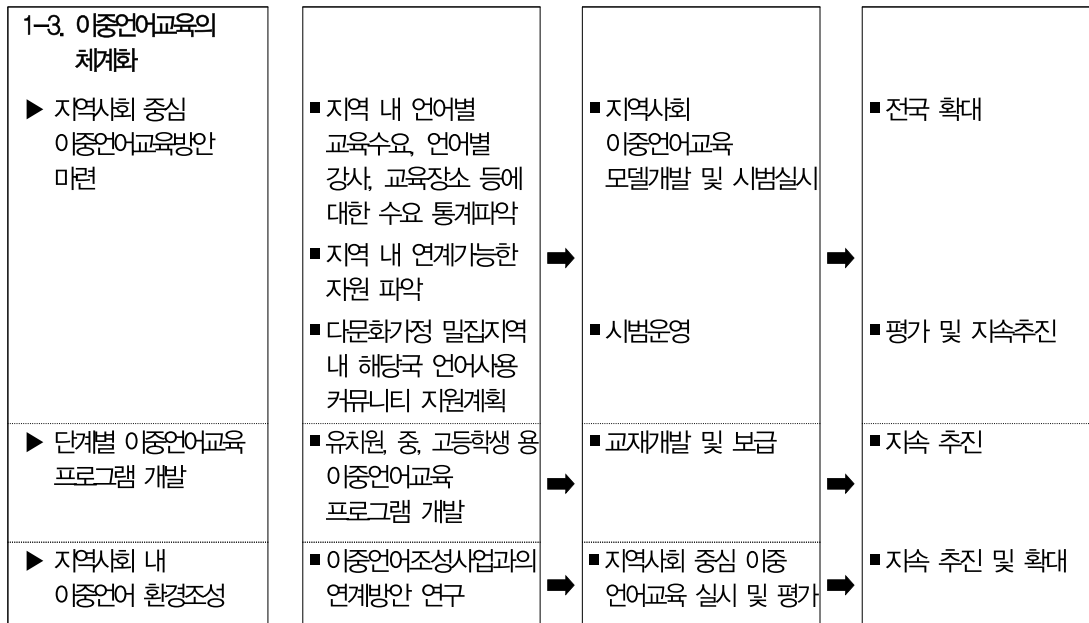
- 이중언어조성사업과 이중언어교육사업의 연계
 - 여성가족부의 이중언어조성사업과 교육부의 이중언어교육사업의 연계방안 마련 (이중언어조성사업의 프로그램을 체계화 하여 이중언어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 지역별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최 → 연말 전국대회(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성하여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성취로 개념화)

◆ 「전략 1.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개요

전략 1.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과제 및 세부과제	2018	→	2019	→	2020
1-1.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 대학생 멘토링 사업 참여대학 확대 ■ 대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모델 개발 ■ 대학생 멘토링사전교육과정 개발 ■ 대학생 멘토링 모니터링방안 마련 ■ 성과공유방안 마련	→	■ 지속확대 ■ 시범사업 ■ 사전교육 실시 및 효과성검증 ■ 모니터링 및 과정 평가 ■ 성과공유실시 및 효과성 검증	→	■ 지속확대 ■ 본사업 전국확대 ■ 사전교육 수정 및 최종교육안 도출 ■ 모니터링결과 반영 차년도 참여여부 결정 ■ 성과공유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연계	■ 다문화청소년형 방과후아카데미 모델 개발 ■ 학교연계방안마련 ■ 학교홍보연계	→	■ 시범운영(안산 등) ■ 학교 연계 ■ 지속홍보	→	■ 전국 확대 ■ 지속 연계 ■ 지속홍보
▶ 지역사회 학습멘토링 결연사업 추진	■ 지자체중심 학습 멘토링결연계획 ■ 학습멘토링 운영지침 마련	→	■ 사업추진 및 평가 ■ 지침적용 및 보급	→	■ 지속추진 및 평가 ■ 대상자 교육에 활용
▶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진로지도 방안 마련	■ 학교연간진로교육 계획안 마련 ■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연계 계획수립	→	■ 시범실시 ■ 연계실행 및 평가	→	■ 전국 확대 ■ 지속추진

▶ 한국어교육 내실화	■ 학교밖 진로교육 연계방안 마련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교육교재 및 매뉴얼 제작 ■ 교원 및 현장 한국어강사대상 한국어(KSL)교육과정 이해 연수과정 개발 ■ 한국어교육과정 해례서 발간을 위한 연구 ■ 지역사회 한국어 교육연계시스템 구축	■ 연계실행 및 평가 ■ 제작된 매뉴얼 보급 및 홍보 ■ 시범운영 ■ 해례서 발간 ■ 학교 외 다문화청소년대상 한국어교육기관에 한국어교육과정 보급 ■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준교재 및 표준교수법 개발 ■ 지역연계시범사업 추진	■ 지속추진 ■ 지속추진 ■ 지속추진 ■ 전국 확대 ■ 전국 확대 ■ 전국 확대 ■ 전국 확대 추진
1-2. 심리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상담업무 종사자의 다문화청소년 전문성 강화 ▶ 지역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구성요소 추출 및 내용 구성 ■ 다문화이해교육연수 과정구성 ■ 다문화청소년심리치료 모형 개발연구 ■ 다문화청소년 심리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관련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심리지원단 구성	■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제작 ■ 시범운영 및 평가 ■ 다문화청소년상담 사례 워크숍 개최 ■ 사업추진 ■ 연계사업추진 및 평가 ■ 사례관리 전문가 배치	■ 전국 보급 ■ 전면실시 ■ 지속추진 ■ 지속추진 ■ 지속추진 ■ 평가 및 지속추진



【그림 III-5】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전략의 로드맵

추진전략 2.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추진과제	세부과제
2-1. 부모 역량강화	2-1-1. 다문화가정 부모 연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1-2.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지연연계시스템 구축 2-1-3. 자녀교육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가. 현 황

- 청소년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부모의 지원인 것에 비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지원이 취약한 경향이 있음. 따라서 부모의 자녀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결국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이끄는 요인임.
- 현재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학교 및 진학에 대한 온라인교육과정과 각종 매뉴얼 등이 개발되어 있고, 학교별로 학부모교육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개발된 교육자

료나 매뉴얼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실제 이용량은 많지 않으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의 경우 실효성에 대한 불신과 참여의 어려움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참여도가 매우 저조함.

-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학부모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 세부과제

2-1-1. 다문화가정 부모 연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연간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적 운영
 - 청소년의 교육과정에 따른 연간 학부모교육의 내용 개발 및 운영
 - 학교급별 진로 및 진학관련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예비 학부모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학교제도, 학교생활 안내, 학부모 활동 준비 프로그램
 - 교육청, 학교, 지역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등과 협력 운영

2-1-2.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지역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 내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청소년수련관 등과 연계시스템 구축
 - 각 기관별 업무분장과 연계협력(예를 들면, 지역별로 지역 교육지원청 추진 및 강사섭외,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상자 모집 및 홍보, 다문화청소년전문기관은 부모교육내용 구성협의, 청소년수련관은 장소제공 등)
 - 개별 학교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 부모교육방식으로 추진

2-1-3. 자녀교육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 자녀성장단계별 맞춤형 부모 교육강화

- 지역별 학부모 대상 자녀지도 관련 요구도 사전 조사
 - 부모-자녀관계,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 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 제공
 - 아버지교육 강화
- 부모상담시스템 구축 및 홍보
- 자녀상담 및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다문화가정 부모 상담기능 강화
 - 시도교육청 산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진로상담기능을 강화, 학부모진로상담실 마련
 -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여성가족부)을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학부모 자녀상담 기능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부모대상 학교밖청소년 상담 기능 강화
 -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 역량 강화
 - 다양한 상담시스템 구축 후 지역사회 내 부모상담 기관 및 내용 홍보(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다문화가족센터 등)
- 자녀교육 정보제공 방안 마련
- 다국어 진로 및 진학 가이드 개발, 커리어넷에 탑재
 - 다누리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출입국관리소 등 공공기관에 다국어 학교 편입학 정보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함.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 진로정보 각종 자료 연계

추진과제	세부과제
2-2. 교사 역량 강화	2-2-1. 교대 및 사대 다문화교육 의무화 2-2-2.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교사 양성 2-2-3. 교원 다문화연수프로그램의 확대 및 내실화 2-2-4. 진로·상담교사 다문화 역량강화 2-2-5. 학교 다문화청소년 지도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가. 현 황

-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교사의 역량강화는 필수요소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사대상 다문화이해교육연수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양적으로 확대되는 데 비해 교육의 내용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서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바 없고, 체계적, 단계적 심화연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일반적인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에 대한 수준을 넘어서 학교 내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 내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보다 근본적인 교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된 이후 단기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보다는 예비교사 단계에서 다문화교육 역량을 갖춘 후 배출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다문화교육이 교직실무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교직실무과목에 포함된 것이 다소 부적절하고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

나. 세부과제

2-2-1. 교대 및 사대 다문화교육 의무화

■ 예비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개발

- 교대 및 사대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제'과정 개발, 필수과목에 포함
- 다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 후 전국교대 및 사대로 확대
-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다문화교육과정 포함'을 평가지표에 반영

2-2-2. 다문화교육 전문교사 양성

■ 교원 대상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

- 교원 대상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과정 개설
- 교사가 다문화교육양성과정을 거쳐서 학교 내에서 학생대상 다문화교육을 하도록 하고, 현재의 다문화언어강사는 보조강사로 함께 활동하도록 함.

2-2-3. 교원 다문화연수프로그램의 확대 및 내실화

- 교원연수 표준프로그램 및 필수요소 개발
 - 현재의 교원연수과정 분석연구
 - 교원연수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요소 개발
- 수준별 다문화연수프로그램안 마련
 - 맞춤형 다문화연수프로그램 과정 구성
(일반교사 과정, 관리자 과정, 다문화담당교사 과정 등)
 - 수준별 다문화연수프로그램 과정 구성
(초급, 중급, 고급 등)

2-2-4. 진로·상담교사 다문화 역량강화

- 진로·상담교사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표준프로그램 및 필수요소 개발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
- 진로·상담교사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 세분화된 맞춤형 진로 연수 프로그램 추진(대상 및 내용별. 예를 들면, 학교 관리자, 다문화담당 교사, 진로전담교사, 일반교사 등 대상별 구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관련법과 제도 등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

2-2-5. 학교 다문화청소년 지도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다문화학생 교육 및 지원방식 운영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 보급
 - 다문화학생 교육 및 지원방식에 대한 운영원칙과 가이드라인 마련
(다문화학생 통합적 교육의 운영원칙과 가이드라인)
 - 다문화학생 통합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통합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나 멘토 등의 진행자들이 참가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이해교육이나 유의할 점 등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 보급)

- 다문화학생 행정처리, 상담, 진로, 학습지도,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에 관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추진과제	세부과제
2-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다문화 역량강화	2-3-1.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무연수에 다문화 이해교육과정 포함 의무화 2-3-2.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다문화이해교육과정 이수 필수화 2-3-3. 청소년관련기관 및 종사자의 다문화윤리강령 제정

가. 현 황

- 다문화청소년들은 학교 외 지역사회 다양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와 접촉을 할 수 있음. 교사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년 연수를 받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관련 업무담당자의 경우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지 않고 있음.
- 다문화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업무 담당자들의 다문화역량도 역시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세부과제

2-3-1.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직무연수에 다문화이해교육 의무화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의 다문화이해교육 의무화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수요소 추출 및 필수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 구성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직무연수(신규, 보수)에 다문화이해교육과정 필수 포함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실제 상담사례, 진로지도, 활동프로그램 사례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2-3-2.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및 시설 종사자 다문화이해교육 과정 이수 필수화

-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및 시설종사자의 다문화이해교육과정 개발
-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및 시설종사자 다문화감수성 워크샵 개최
- 청소년지도사 대상 다문화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2-3-3. 청소년 관련기관 및 종사자의 다문화윤리강령 제정

-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다문화윤리강령 마련
 - 청소년활동 지도과정의 다문화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교육 및 보급
 - 모든 청소년활동에서 다문화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다문화윤리강령이나 다문화민감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기관이나 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 「전략 2.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개요

전략 2.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과제 및 세부과제	2018	2019	2020	
2-1. 부모 역량 강화 ▶ 다문화가정 부모 연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지역연계시스템 구축	■ 연간교육과정 개발 ■ 학교급별 진로진학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 예비다문화학부모 프로그램 개발	■ 연간교육과정시범운영 ■ 학교급별 시범운영 ■ 지역 내 기관 협력방안 구축	■ 연간교육 전국 확대 ■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사회 중심 부모교육 실시	
	■ 지역 내 교육지원청,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청소년전문기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연계시스템 구축 ■ 기관별 업무분장 ■ 시범운영	■ 지역연계 운영 및 평가	■ 지속추진	

▶ 자녀교육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 자녀지도관련 요구도 조사 ■ 요구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부모상담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진로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다문화학부모상담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다국어 진로진학 가이드 개발 ■ 공공기관 다국어 학교 편입학 정보 및 교육정보 제공	■ 개발된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 시스템구축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 커리어넷 등 관련 홈페이지 탑재 및 홍보	■ 지역별 확대실시 ■ 지속추진 및 확대
2-2. 교사 역량강화			
▶ 교대 및 사대 다문화교육 의무화	■ 교대 및 사대 '다문화교육 이해와 실제' 과정 개발 ■ 교직이수 필수과목 포함을 위한 사전작업	■ 다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 ■ 교직이수 필수과목에 포함 및 교육과정 제공	■ 전국 확대 ■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다문화교육과정포함여부' 반영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교사 양성	■ 교원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양성과정 구성을 위한 TF구성	■ 교원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 구성	■ 지속추진 및 확대
▶ 교원연수의 표준 프로그램 및 필수요소 개발	■ 교원연수프로그램 분석 및 필수요소 개발연구 ■ 대상별 교원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개발	■ 수준별 다문화연수 프로그램 과정 구성 및 평가	■ 연수추진
▶ 진로·상담교사 다문화청소년이해교육 표준프로그램 및 필수 요소 개발	■ 진로·상담교사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표준 프로그램 개발연구	■ 연수에 활용 및 평가	■ 지속추진 및 확대

	■ 대상별 다문화청소년 진로에 대한 이해 교육프로그램 구성		
▶ 학교다문화청소년 지도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다문화학생교육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운영 원칙 및 가이드라인 구성 ■ 다문화학생 행정처리, 상담, 진로, 학습지도,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에 관한 매뉴얼 제작	■ 시범적용 ■ 시범적용	■ 지속추진 및 확대 ■ 지속추진 및 확대
2-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관련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무연수에 다문화교육 과정 포함 의무화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수요소 추출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과정 구성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교육의 신규 연수 및 보수연수에 다문화이해교육과정 필수과목 지정 ■ 시범적용 및 평가	■ 지속추진 및 확대
▶ 청소년관련업무담당자 다문화이해교육과정 이수 필수화	■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과정 개발 ■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맞춤형 다문화감수성워크숍 과정 개발	■ 교육실시 및 평가 ■ 워크숍 실시 및 평가	■ 지속적 추진 및 확대 ■ 지속추진
▶ 청소년관련기관 및 기관 종사자 다문화 윤리 강령 제정	■ 청소년관련기관 및 기관종사자용 다문화윤리강령 제정	■ 시범적용 및 평가	■ 전국 확대

【그림 III-6】 ‘지지집단의 역량강화’전략의 로드맵

추진전략 3. 친다문화적 환경조성

추진과제	세부과제
3-1. 청소년 다문화이해교육 내실화	3-1-1. 학교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의 필수화 3-1-2. 학교 다문화윤리강령 제작 및 보급 3-1-3. 교과과정 내 다문화이해교육 반영

가. 현 황

- 현재 친다문화적 환경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다문화중점학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이해교육’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이해교육’ 등이 있음. 그러나 다문화이해교육은 권장사항일 뿐 필수사항이 아니기에 글로벌다문화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다문화이해교육의 ‘문화’를 ‘의·식·주’ 또는 ‘예술’ 등 협의의 의미로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실시되는 등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학교차원의 이해가 부족한 편임.
-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은 보다 광의의 의미의 타문화이해에서 나아가 반편견, 반차별, 인권존중의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나. 세부과제

3-1-1. 학교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의 필수화

- 학교급별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급별 다문화이해교육의 표준 요소 구성안 마련
 - 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초·중·고등학생용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구성
 - 학교급별 운영가능한 시간(예: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개발된 다문화교육 필수운영

3-1-2. 학교 다문화윤리강령 제작 및 보급

- 학교 다문화윤리강령 구성을 위한 전문가 단(교육청, 학교교사, 다문화교육전문가, 인권교육 전문가 등) 구성 및 운영
- 학교 다문화윤리강령 제작 및 전 학교 보급
- 다문화이해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에게 보급
- 학교교사에게도 보급하여 전 학교가 다문화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함.
- 교사, 학생 등이 다문화윤리강령을 어겼을 경우 처리지침을 구성하고 처리함을 전 구성원에 게 공표

3-1-3. 교과과정 내 다문화이해교육 반영

- 전 학년 전 학기 교과서에, 다문화적 시각 반영
 - 교과서 분석, 다문화적 요소 개발, 교과서 내 포함, 교과서 개정
 - 개정된 교과서에 대한 교사 교과지도안에 해당 내용의 목표, 지도방법 등 포함
 -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로 점진적 확대

추진과제	세부과제
3-2. 다문화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시스템 구축	3-2-1. 청소년수련시설의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강좌 개설 3-2-2. 지역 다문화이해교육지원시스템 구축

가. 현 황

-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나 학교에서는 정해진 시수로 인하여 충분한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반드시 학교에서 다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할 필요 없이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시설(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일정부분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

나.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3-2-1. 청소년수련시설의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강좌 개설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강좌를 개설하고,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근거하여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이 때 강사는 지역의 다문화이해교육전문가를 활용하여 강좌를 열고,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실적으로 카운트를 하여, 다문화이해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

3-2-2. 지역 다문화이해교육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 다문화이해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지역별로 다문화이해교육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다문화이해교육자료, 교사용 업무매뉴얼, 행정매뉴얼, 상담매뉴얼, 부모상담매뉴얼, 생활지도매뉴얼, 우수사례분석 등 기존에 개발된 성과물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내 다문화청소년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 비치하거나 각 학교 홈페이지에 연동하여 접근가능성을 높임.
 - 지역다문화이해교육 포털사이트의 추진주체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역다문화교육센터로 함.
- 지역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풀 구축 및 연계 제공
 - 지역 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풀을 구축하여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에 제공
 - 지역 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인력 양성, 연수, 워크숍 및 보수연수 등 실시

◆ 「전략 3. 친다문화적 환경조성」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개요

전략 3. 친다문화적 환경조성				
과제 및 세부과제	2018	2019	2020	
3-1. 청소년다문화이해 교육 내실화 ▶ 학교다문화이해교육 필수화 ▶ 학교다문화윤리강령 제작 및 보급 필수 ▶ 교과과정 내 다문화 이해교육 포함	■ 학교급별 다문화이해 교육의 표준요소 추출 및 구성안 ■ 학교급별 학교현장에 맞는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구성	■ 다문화중점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및 평가 ■ 전 학교에 보급 ■ 처리지침 구성	■ 전국학교로 확대운영 ■ 지속추진 및 운영	
	■ 학교다문화윤리강령 구성을 위한 전문가단 구성 ■ 학교다문화윤리강령 제작 및 의견수렴	■ 교과서에 다문화이해 교육적 접근의 개정(안) 마련	■ 개정교과서 배포	
	■ 초, 중, 고등학교 별 교과서 분석			
3-2. 다문화친화적 지역사회환경조성 시스템 구축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다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다문화이해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으로써 다문화이해교육 과정 구성 ■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근무자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운영방안 교육	■ 지역 내 시범실시 및 평가 ■ 지역사회에 포털 사이트 홍보 ■ 지역사회 강사연계	■ 지속추진 ■ 지속추진 ■ 지속추진	
	■ 지역다문화이해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 지역 내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풀 구성			

【그림 III-7】 ‘친다문화적 환경조성’전략의 로드맵

추진전략 4.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체계 확립

추진과제	세부과제
4-1. 지역사회중심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4-1-1. 지역사회 중심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모형개발 4-1-2. 다문화청소년정책사업 지역연계체계 구축

가.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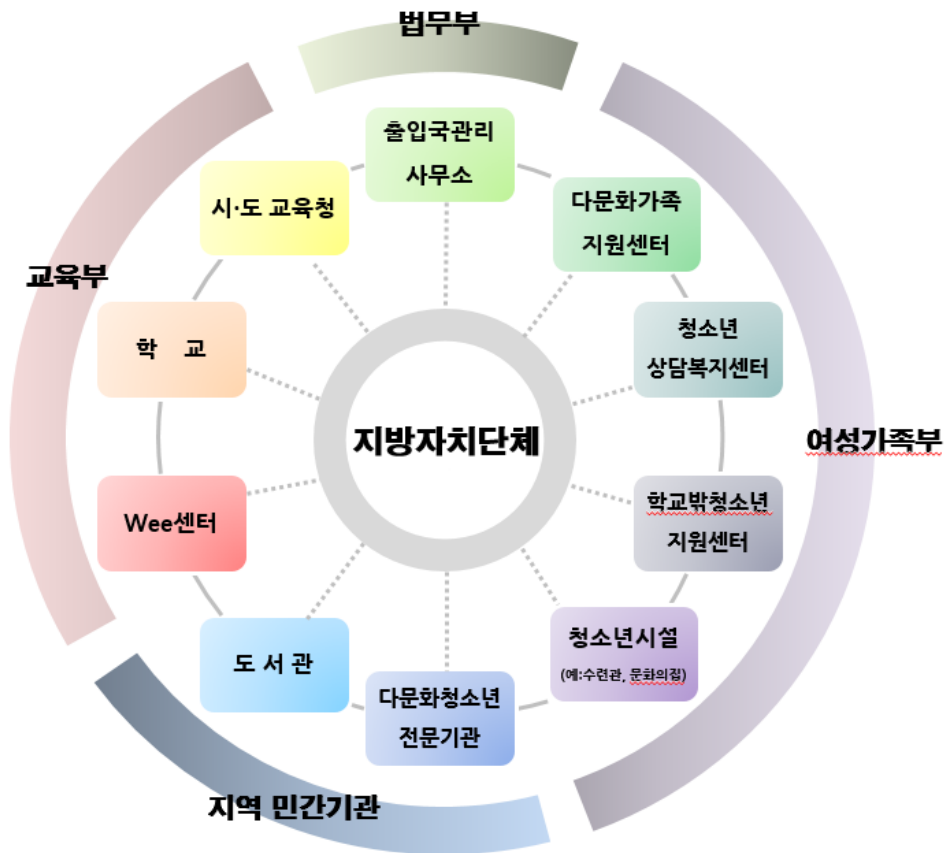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고 있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일부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각 부처별 연계의 필요성은 수년 간 제기되는 주제이고, 상호 연계를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나 연계의 중심추진체계가 부재하는 관계로 실제 연계는 원활하지 않음.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집행은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가능한 자원들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지원 및 전반적인 청소년다문화교육이 가장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은 학교이나 학교에서 전적으로 다문화청소년지원과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님. 따라서 학교와 학교밖 기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나. 세부과제

4-1-1. 지역사회 중심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모형 개발

- 지역사회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모형 개발
 -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 (다문화청소년정책위원회(가칭)) 결성
 - 지자체 내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관 및 청소년관련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 (시·도교육청, 학교, Wee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이 모두 포함됨)

- 다문화청소년 전문가를 외부전문위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8】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안)

4-1-2. 지역사회 중심 지역연계체계 구축

- 지역사회 중심 ‘다문화청소년정책위원회(가칭)’가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위에 예로 제시한 지역 내 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 관련기관이 모두 위원회에 포함되어, 각각의 업무를 분장함.

- 지역 ‘다문화청소년정책위원회(가칭)’가 중심으로 각 업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 아래와 같이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음.

표 III-17 지역 주요 청소년관련 기관 및 주요 업무분장(안)

중앙	지역	주요 업무
행정안전부	지자체	■ 지역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사업 총괄 ■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파악, 연계 및 분장 ■ 다문화청소년 현황 통계 파악(학교 내, 학교밖)
교육부	시도교육청	■ 교원 다문화연수 ■ 학교다문화교육 정책사업 ■ Wee 센터활용 다문화청소년 상담 지원 ■ 교사,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학부모 교육 주관
	학교	■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학부모 교육 홍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부모교육 협력 ■ 유아 및 아동 생활지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다문화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 발생시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청소년 사례관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청소년 진로체험활동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중도입국청소년 통계 파악 및 정보제공 ■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사업 홍보
지역 민간 지자체 지원기관	도서관	■ 한국어교육, 독서지도 등 ■ 한국어글쓰기, 언어멘토링 등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 다문화청소년 사례관리 ■ 학부모교육 ■ 학교밖 다문화청소년 지원

추진과제	세부과제
4-2. 다문화청소년 지원 및 다문화교육 관련 법률검토 및 개정	4-2-1. 청소년 기본법에 다문화청소년 관련 내용 포함 4-2-2. 학교 다문화교육지원법 제정

가. 현 황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에 따라 다문화이해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다문화사회의 청소년의 다문화적 역량은 미래 청소년의 자질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나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는 더욱 빈약한 편임. 따라서 청소년 정책에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전반의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다문화교육 지원법(가칭)을 제정할 필요 있음.

나.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4-2-1. 청소년 기본법에 다문화청소년 관련 내용 포함

-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지원과 다문화이해교육의 근거조항을 마련
- 아래와 같이 제 2조(기본이념)에 ‘다문화사회’사회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이라는 부분을 포함함.
- 또한 제 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소외방지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 상담 및 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함께, 이 때의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1항에 근거한 청소년, 그리고 그 외 이주배경을 지닌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라는 조항을 포함하여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기본법 (현행)	개정(안)
제2조 (기본이념) ①, ②의 1, 2, 3 생략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개정>	제2조 (기본이념) ①, ②의 1, 2, 3(현행과 같음) 4. 민주, 복지, <u>다문화사회</u> ,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④ 생략 <신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소외 방지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 상담 및 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⑥ 위 ⑤에서 의미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u>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u> 2. <u>그 밖에 이주배경을 지닌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u>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등) ①~③ 생략 <신설>	④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u>

4-2-2. 다문화교육진흥법 제정

- 다문화교육진흥법 목적과 방향, 원칙, 비전 등 포함
-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지원 근거조항 포함
 -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다문화이해교육과정 포함, 교사 다문화직무연수의 체계화, 다문화전문담당교사 배치 등의 근거조항 포함
 -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의 교육지원의 근거조항 포함
- 다문화이해교육 실시의 근거조항 포함
 - 다문화시각을 반영한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의 근거조항 포함
 -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수화 근거조항 포함

- 일반공무원, 경찰, 군인 등을 포함한 공공업무종사자의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수화 근거조항 포함.

추진과제	세부과제
4-3. 다문화청소년정책 관련 기초 통계자료 구축	4-3-1. 범부처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정리 4-3-2. 다문화청소년 통계구축

가. 현 황

- 부처별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상의함에 따라 통계도 상의함. 교육부의 경우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 가정 중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와 외국인가정 자녀(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 모두를 다문화학생으로 정의하는데 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내성장, 외국거주경험, 외국주로 성장으로 구분하고, 국내성장 이외의 두 집단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정 자녀(만 9세에서 24) 중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정의함.
- 이 경우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의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 이에 국가차원의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일원화된 통계구축작업이 필요함.

나.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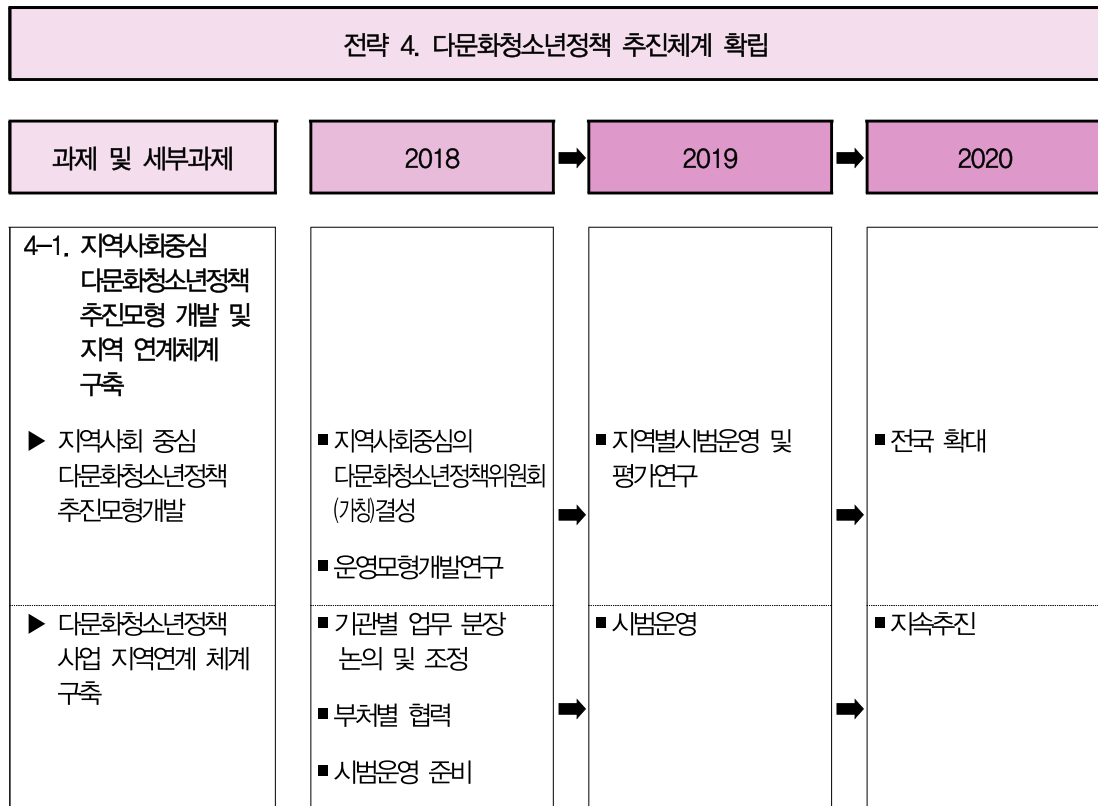
4-3-1. 범부처 공통 다문화청소년의 개념정립

- 다문화청소년의 개념정리를 위한 범부처 TF 구성
- 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담당자, 국내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성
-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따른 유형화 및 개념 정립
- 개념정립 후 모든 관련법 조문 통일

4-3-2. 다문화청소년 통계구축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당지역 내 학교와 학교밖에 존재하는 모든 다문화청소년의 통계 파악(유형, 성별, 연령, 국적, 부모국적, 거주지, 학교재학여부, 학교밖의 경우 현재 거주지 및 요구도 등)
- 학교, 지자체, 지역 내 다문화 관련 기관과 개인정보 외 통계 공유(지원 연계를 위한 목적일 경우)
- 지역 내 지원시스템에 대한 통계 및 리스트 구축

◆ 「전략 4.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개요





【그림 III-9】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전략의 로드맵

5. 결 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시리즈의 일환으로 수행된 정책제언을 총 정리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다문화청소년정책이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국사회 전반의 다문화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가 시작될 초기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정책에도 변화가 있었고, 한국사회의 다문화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한국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경우 큰 틀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였고, 새로이 추진되어야 할 부분도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제공하기 보다는 현재의 정책들을 중심으로 개선, 수정 및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근거로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다문화청소년정책은 크게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지지집단 역량강화’, ‘친다문화적 사회환경조성’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추진체계 확립’이라는 네 개의 큰 전략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격차를 해소하며,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차별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목적을 향후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큰 틀은 중앙부처를 통해 기획되지만 실제 실행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는 다문화청소년정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모든 사업을 지역사회중심으로, 지자체가 추진체계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단계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정책을 내실화하고 질적수준을 제고하면서 지역사회별로 현실에 기반한 정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7). 다문화교육 내실화방안(안) (내부자료). 세종: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팀.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2017).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세종: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권영호, 지성우, 강현철 (2009).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연구 09-16).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철, 모상현, 오성배 (2015).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서 15-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20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소개.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7&pageSeq=118>에서(인출일 2016. 12. 30); 양계민 외(2017), p. 125 재인용
- 다음백과 (2017). 유엔 아동권리협약 (UN CRC: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130>. (2017년 10월 17일 검색).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 01. 04).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공모.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여가정책과.
- 박복순, 박선영, 송효진, 선보영, 강기정 (2013).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3-44).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2017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제사법위원회 (2015).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2015. 4.)
- 양계민, 김성식, 김재우 (2017).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연구** (연구보고17-R34). 세종: 교육부.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I** (연구보고 12-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박주희 (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3-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서 14-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V: 총괄보고서** (연구보고서 16-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 권리교재**(청소년용 핸드북),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연구** (연구보고 2016-10).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여성가족부 (2016).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다문화정책 체질개선**. 뉴스·소식, e뉴스, 정책뉴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2017, 10. 7일 검색)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5).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

- 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7).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7).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7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15).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16).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연보라 (2017).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승우 (2009). 다문화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 연구**, 23(3), 215-238.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MYF 16-15인).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 조상균, 이승우, 전진희 (2008). 다문화가정 지원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8(1), 147-174.
- 한국장학재단 (2016). **2016년도 글로벌브릿지사업 세부 시행계획(안)**. (내부자료). 대구: 한국장학재단.

참고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02호, 2017.3.21.,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542&efYd=20170321#0000> (2017년 10월 17일 검색).
-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298호, 2012.2.10.,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80&efYd=20130701#0000> (2017년

10월 17일 검색).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18&efYd=20170726#0000> (2017년 10월 17일 검색).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7호, 2016.12.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2&efYd=20170621#0000> (2017년 10월 17일 검색).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08호, 2017.6.1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4218&efYd=20170621#0000> (2017년 10월 17일 검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12호, 2017.6.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4336&efYd=20170622#0000> (2017년 10월 17일 검색).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projects for the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y analyzing the past policy suggestions from 2011 to 2016 and reviewing multicultural youth-related laws and policies by bureau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it analyzed and assessed the followings: Korean and foreign multicultural youth-related laws and master plans and major multicultural youth policies by bureau. Furthermore, it evaluated if the policy suggestion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and derived and proposed multicultural youth policy direction and projects through SWOT analysis. The directions and projects of the derived policies are as stated herein. The vision that multicultural youth should have is ‘Build Mature and Prosperous Society’ , and the purposes are i) to create future growth engine for society and ii) to build an equal and fair society without prejudice. First, to create future growth engine for society, it is targeted to narrow down the academic and career gap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is, it is needed to help multicultural youth build their competency and strengthen support group’ s capabilities. Second, to build an equal and fair society without prejudice, it is aimed to increase multicultural acceptance. For this, it is suggested to build multiculture-friendly environments and establish a multicultural youth support policy promotion system. A total of 11 projects under such strategies were mentioned, and the roadmap for each project was introduced.

Keywords: Multicultural Youth, Longitudinal Study, Multicultural Youth Support Policy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윤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유미 · 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유미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rley, J·Losito, B·Agrust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김성식 · 김재우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의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12-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 정책제언

인 쇄 2017년 12월 22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66-0 94330

979-11-5654-145-5 (세트)

연구보고 17-R12-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660
ISBN 979-11-5654-166-0
ISBN 979-11-5654-145-5 (세트)